제10회 노회찬비전포럼 세미나 <월간 함:비>

감세정책의 실상과 사회경제적 부작용 진단

"정치권의 감세 합의가 국민통합을 가져올 수 있을까?"

25.4.29(화) 오후 7시
노회찬재단 배움터

사회
박창규 노회찬재단
노회찬비전포럼 운영위원장

발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토론
김정진 변호사
노회찬비전포럼 운영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참가신청 바로가기
문의 노회찬재단
02-713-0831

감세정책의 실상과 사회경제적 부작용

2025. 4. 29.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1.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 저성장과 양극화

외환위기 직전까지 40년간 고도성장

외환위기를 빠르게 극복했지만

이후 성장률 추세는 하향세,

게다가 양극화의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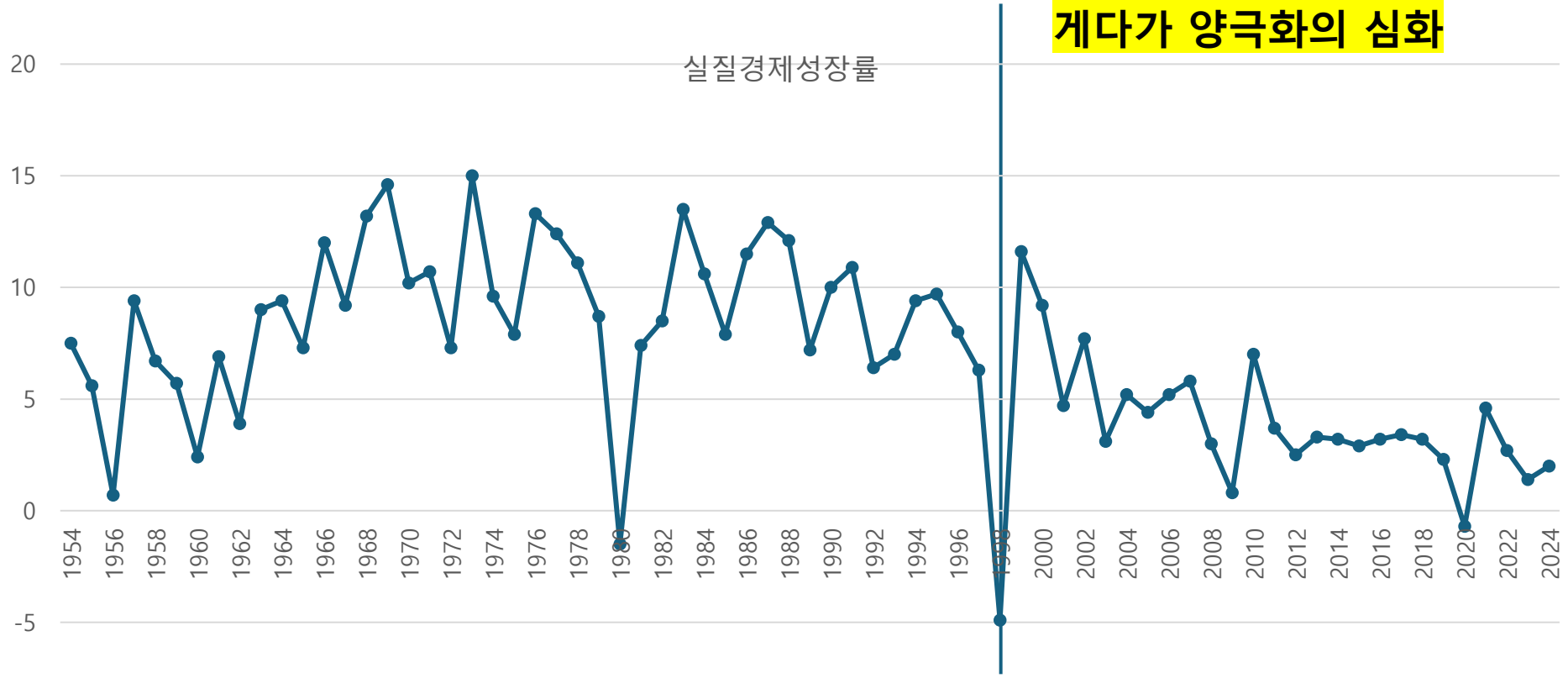

세계, 선진국과 한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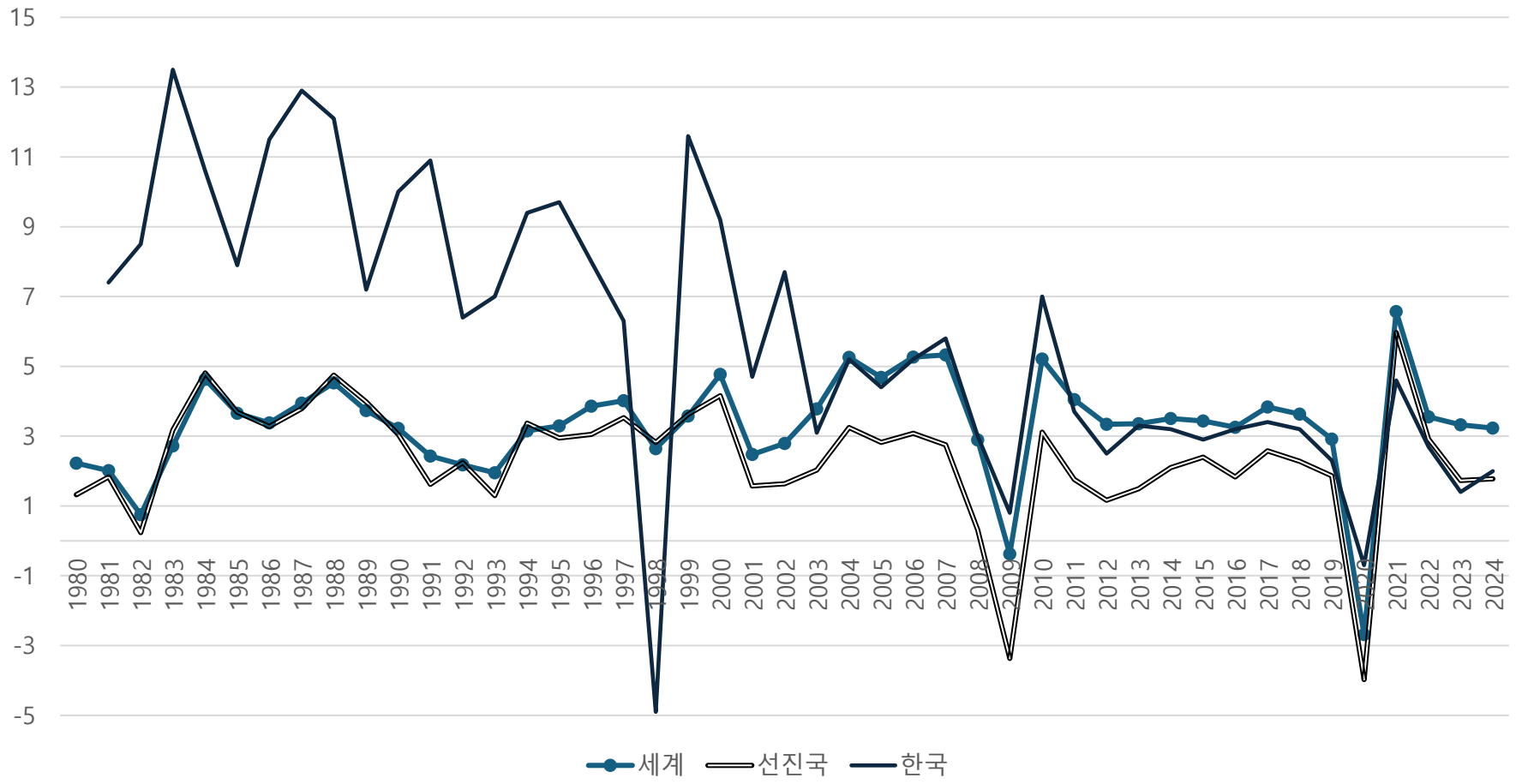

수출과 내수의 추이

외환위기 이전: 수출과 내수 호조
외환위기 직후: 수출 양호, 내수 부진
2013년 이후 : 수출 다소 위축, 내수 부진
지난 몇 년 : 수출 위축된 채 유지, 내수 더욱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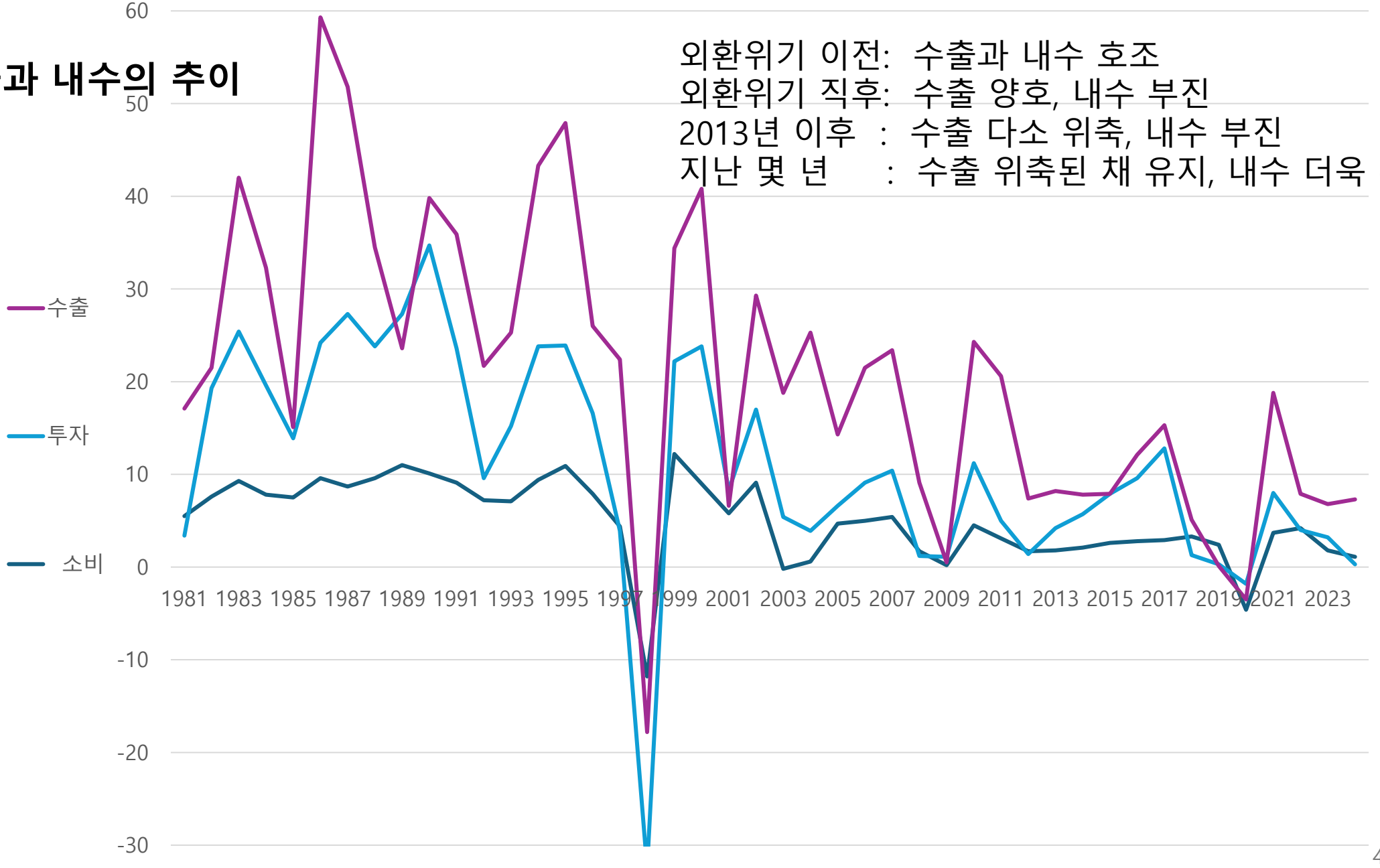

외환위기 이후 소득양극화 심화
상위 10%의 소득 증가는 하위 50%의 소득 감소와 대칭

Figure 4: Income shares in South Korea 1982-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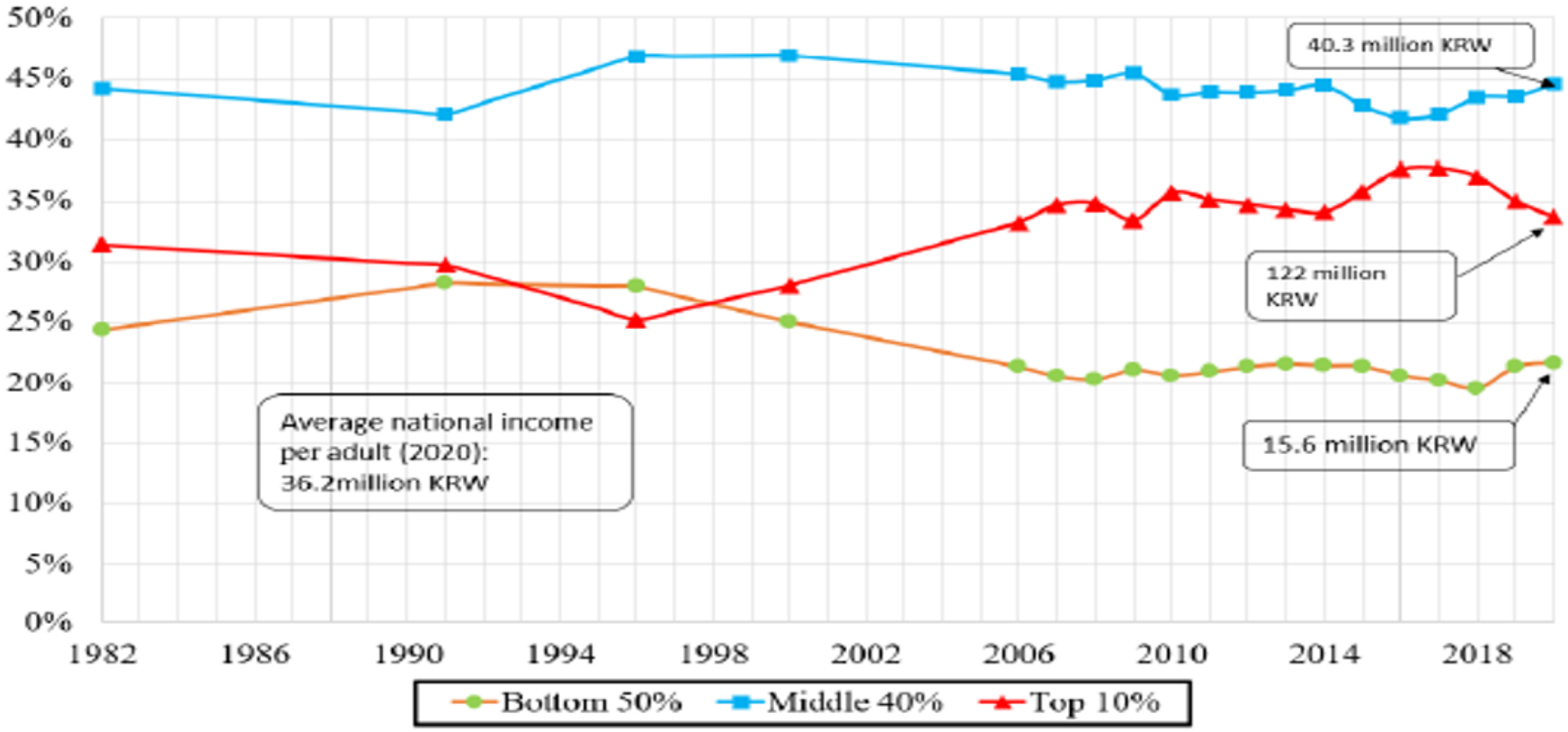

2.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특징

첫째, 낮은 조세부담률.

- 유효세율이 낮음(세금/소득 혹은 세금/자산)
- 저부담-> 저복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담에 비해 복지가 더욱 작음(경제지출 높음)

둘째, 관대한 비과세감면 제도

- 고소득, 고자산에 유리
- 명목세율은 누진세율이어서 매우 누진적 조세체제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두터운 비과세감면제도가 누진도를 줄임.

-직접세 높은 면세자 비율(소득세 뿐 아니라 법인세 포함 모든 세제). 당연히 고소득, 고자산 계층의 세금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따라서 누진적으로 보임. 그러나 저소득층 소비세 부담이 큼.

-또한 다른 국가에 비해 고소득, 고자산 계층의 세부담이 약하고, 국가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함.

OECD 평균에 비해 저세부담 (조세부담률 수준보다 더 낮은 복지)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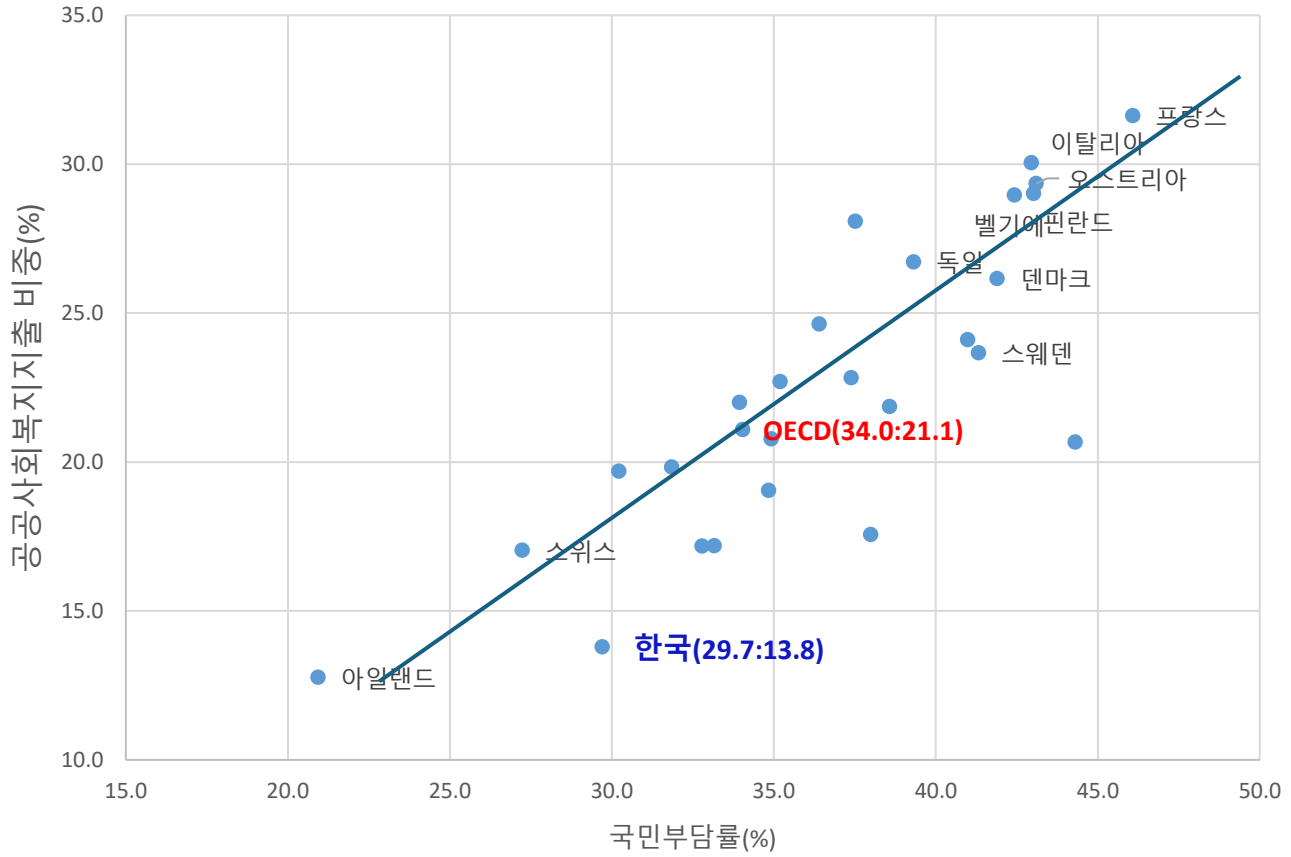

- **총조세부담률(국민 부담률)**
  OECD 평균 34.0% - 한국 29.7% = **4.3%p**
-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OECD 평균 21.1% - 한국 13.8% **= 7.3%p**
- 국민 부담률 29.7%
  = 조세부담률 22.1%+사회보장기여금 7.6%
  OECD 평균보다 각각 3.2%p와 1.1%p 낮음
- **중부담+저복지 ⇒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근접하지만,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

주: 2022년 국민 부담률(36개 국가), 공공사회복지지출(26개 국가) 평균. 한국은 2020년 GDP 기준.

자료: OECD Data Explorer에서 2024.9.16. 추출. 기획재정부, 「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강병구, 정부예산안 총론평가, 윤석열 정부 예산안 토론회, 포용재정포럼 2024. 10.30.

GDP 대비 세목별 세수비중(2020년, %)

	소득세		자산세				소비세	사회보장기여금		
	개인	법인	전체	상증세	보유세	거래세		전체	종업원	고용주
한국	5.3	3.4	4	0.5	1	2.4	6.8	7.8	3.4	3.5
OECD 평균	8.3	2.7	1.9	0.1	1.1	0.5	10.6	9.4	3.4	5.3

- 세수 기준으로 한다면, 소득세, 소비세, 사회보장기여금 증가, 법인세, 자산세 감소.
-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소득과 자산 분배 상태의 결과. **유효세율을 기준으로 하면 법인세, 상증세, 보유세 유효세율은 낮음.** 소득과 자산 분배 상태가 문제.

소득세 역할이 왜 작은가?
명목세율 구조는 충분히 누진적임.

과세표준 구간	현 행
0 ~ 1,200만원	6
1,200 ~ 4,600만원	15
4,600 ~ 8,800만원	24
8,800만원 ~1.5억원	35
1.5~3억원	38
3~5억원	40
5~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최고세율 42%는 OECD 국가 중 14위 수준

· 2020년 OECD평균 최고세율 35.9%

● **첫째, 종합과세가 완전하지 않음**

* 분리과세: 일부 소득은 별도의 원천징수로 납세 종결
①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14%
②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14%
③의료목적 등 연금소득 3~5%
④복권당첨금 등 20%/30%

- 이자, 배당, 임대소득이 많은 고소득층에 유리.

양도소득 과세 약함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 금융투자소득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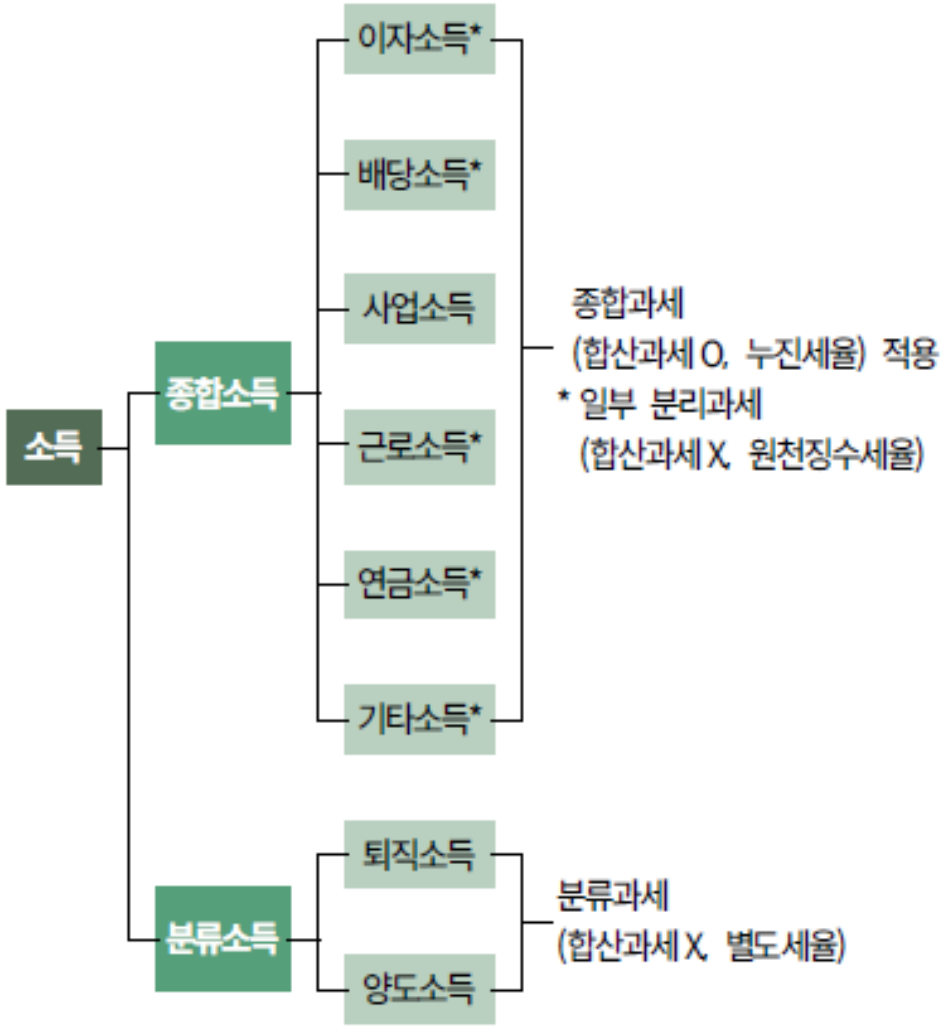

주: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

● 둘째, 비과세감면이 많음(소득공제, 세액공제)
-> 면세자도 많지만 고소득층의 실효세율도 낮아짐.

근로소득세 실효세율 국제비교

(단위: %)

	단독가구					홑벌이 2자녀 가구				
	50%	100%	150%	200%	250%	50%	100%	150%	200%	250%
OECD	7.6	15.0	19.5	22.5	24.7	1.3	10.1	15.6	19.2	21.9
한국	1.5	6.6	10.4	13.7	17.0	0.2	4.7	8.6	12.4	15.4
차이	**6.1**	**8.4**	**9.1**	**8.8**	**7.7**	**1.1**	**5.4**	**7.0**	**6.8**	**6.5**

주 1: 소득구간은 임금근로자 평균소득의 50%~250%.
2: 실효세율=(중앙정부 근로소득세 + 지방정부 근로소득세)÷총임금소득
자료: OECD.Stat, Database.

법인세는 부담스러운 수준인가?

①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26.4%)은 OECD 국가 평균(23.6%)을 상회하지만,

⇒ 실효세율은 높지 않음

②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과세표준이 높아서 적용대상 협소

-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법인수는 151개로 법인세를 납부한 전체 법인기업의 0.03%
- 이들 기업이 납부한 총부담세액은 전체의 47.7%

③ 법인세 공제·감면의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높은 귀속 비중과 최저한세 미적용

- **법인세 공제 및 감면액의 63.6%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귀속되고, 57.8%는 최저한세 무적용**

❖ 2022년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 총 1,117조 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내유보금은 각각 208.8조 원과 58조 원

법인세 국제비교(2023년)

과세표준 구간 수	국가
단일세율 (24개국)	오스트리아(25), 캐나다(26.21), 콜롬비아(35), 체코(19), 덴마크(22), 에스토니아(20), 핀란드(20), 독일(29.94), 그리스(22), 헝가리(9), 아이슬란드(20), 아일랜드(12.5), 이스라엘(23), 이탈리아(27.81), 라트비아(20), 멕시코(30), 뉴질랜드(28), 노르웨이(22), 슬로베니아(19), 스페인(25), 스웨덴(20.6), 스위스(19.65),튀르키예(20), 미국(25.77)
2단계 (10개국)	호주(30), 벨기에(25), 칠레(27), 프랑스(25.83), 일본(29.74), 리투아니아(15) 네덜란드(19-25.8), 폴란드(19), 포르투갈(31.5), 슬로바키아(21)
3단계(2개국)	룩셈부르크(15-24.94), 영국(25),
4단계(1개국)	**한국(9.9/20.9/23.1/26.4)**
5단계(1개국)	코스타리카

주: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한 수치. 호주, 벨기에,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티아 영국 등은 소기업에 대해 기본세율보 낮은 세율 적용.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24),『2024 대한민국 조세』

법인세 실효세율 국제비교

	한국(2020)	일본(2019)	미국(2019)	영국(2020)	캐나다(2018)	호주(2020)
GDP 대비 법인세	3.4%	3.8%	1.3%	2.3%	4.1%	2.8%
법인세 최고세율 (지방세 포함)	25.0% (27.5%)	23.2% (29.74%)	21.0% (25.89%)	19.0% (19.0%)	15.0% (26.78%)	30.0% (30.0%)
실효세율	17.5% (20.5%)	17.7% (25.1%)	14.8% (21.0%)	19.8% (19.8%)	13.4% (20.2%)	24.8% (24.8%)
과세표준/GDP	15.9%	11.5%	8.1%	13.0%	20.2%	11.2%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각국 국세청 과세자료.

부동산 보유세율 부담은 높은 편인가? NO

부동산 실효세율은 민간보유 부동산 총 가치 대비 보유세 세수 비율.

OECD 주요국의 부동산 실효세율 (토지+자유 연구소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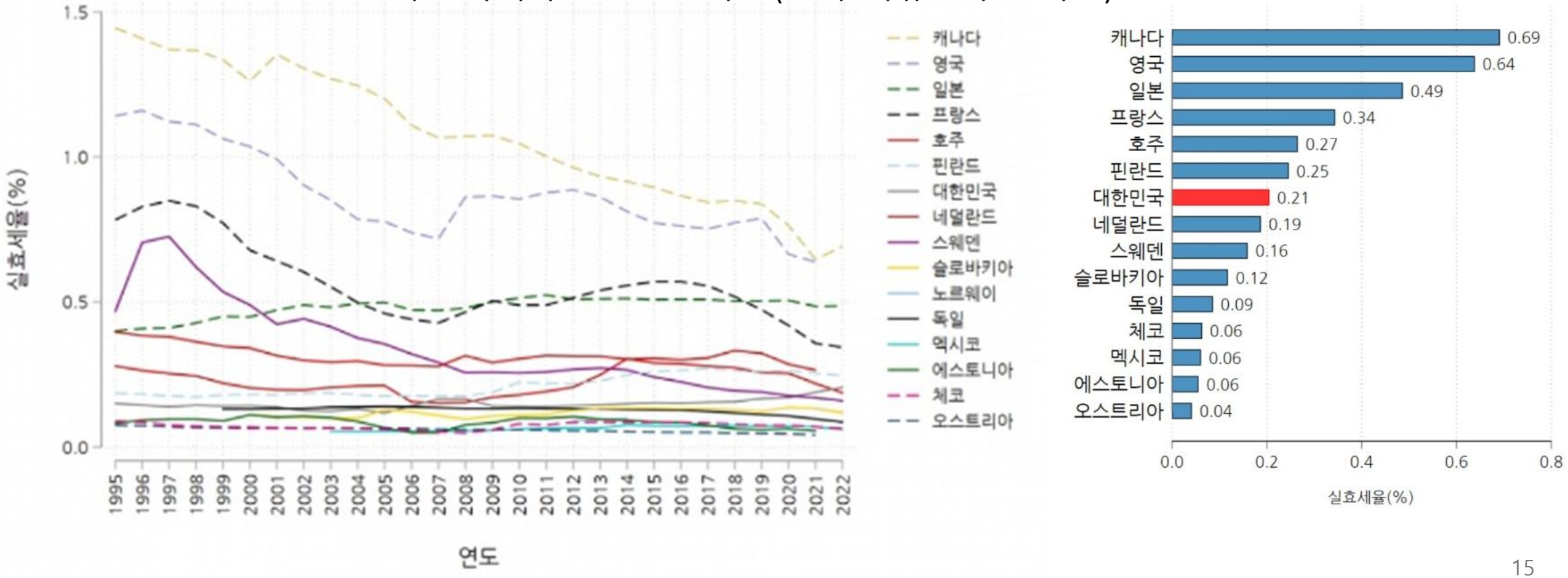

비과세감면 제도가 세제 교란. 그러나 정비 쉽지 않음

- 비과세감면은 기본적으로 역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 그러나 원래의 도입 목적이 있고 이해집단이 있기 때문에 정리가 쉽지 않음.
- 복지나 R&D 등은 재정지출로 실시하도록 원칙 정하고, 비과세 감면 서서히 해소 필요.
- (그러나 각국이 세제지원을 투자유치를 위해 사용하고 있어서 완전히 무시할 수 없음)

<2018~2023 감면액 기준 상위 5개 항목 (단위: 억원)>

순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	보험료	34,999	근로장려금	49,256	근로장려금	44,826	보험료	47,542	보험료	54,859	보험료	58,902
2	연금보험료	27,757	보험료	38,833	보험료	43,630	근로장려금	46,035	근로장려금	44,895	근로장려금	52,452
3	의제매입	26,919	연금보험료	30,457	연금보험료	33,067	연금보험료	34,968	연금보험료	38,404	R&D	45,117
4	R&D	23,793	의제매입	28,578	의제매입	27,985	신용카드 공제	31,882	R&D	37,448	연금보험료	41,183
5	중소기업	22,214	R&D	23,178	R&D	27,340	의제매입	27,429	신용카드	31,841	신용카드	34,191
비율(총액대비)		30.9%		34.4%		33.4%		32.9%		32.6%		33.4%

*보험료(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 연금보험료(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의제매입(면세 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R&D(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신용카드(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 자료 : 각 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필자가 가공

2. 윤석열 정부 감세정책 전략: '감세와 저국채' 금과옥조

재정 보주수의 주장1. 감세 낙수효과 크다 (낮은 조세부담률이 성장에 기여)

공급주의 경제학에서는 **조세의 변화와 총공급과의 상호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 **소득세율 인하**는 근로의욕 고취에 따라 **노동공급을 확대하고**
- **법인세율 인하**는 순법인소득이 증가되어 **투자를 증대**하여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봄

재정 보주수의 주장2. 국채 증가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낮은 국채 수준이 성장에 기여)

- 국채가 많으면 국채 이자를 확보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악순환 발생.
- 국채가 많으면 국가신용도가 하락. 국제조달금리 상승.
- 미래에 조세가 많아질 것이라 생각해서 전생에 걸쳐 소비를 계획하는 가계는 현재 소비를 줄임.

재정 보수주의자 전략: 재정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강조-> 지출 축소 추진

- **2021년 코로나 2년차 국채 증가 비판** (박형수, K-정책플랫폼 창립웨비나 주제발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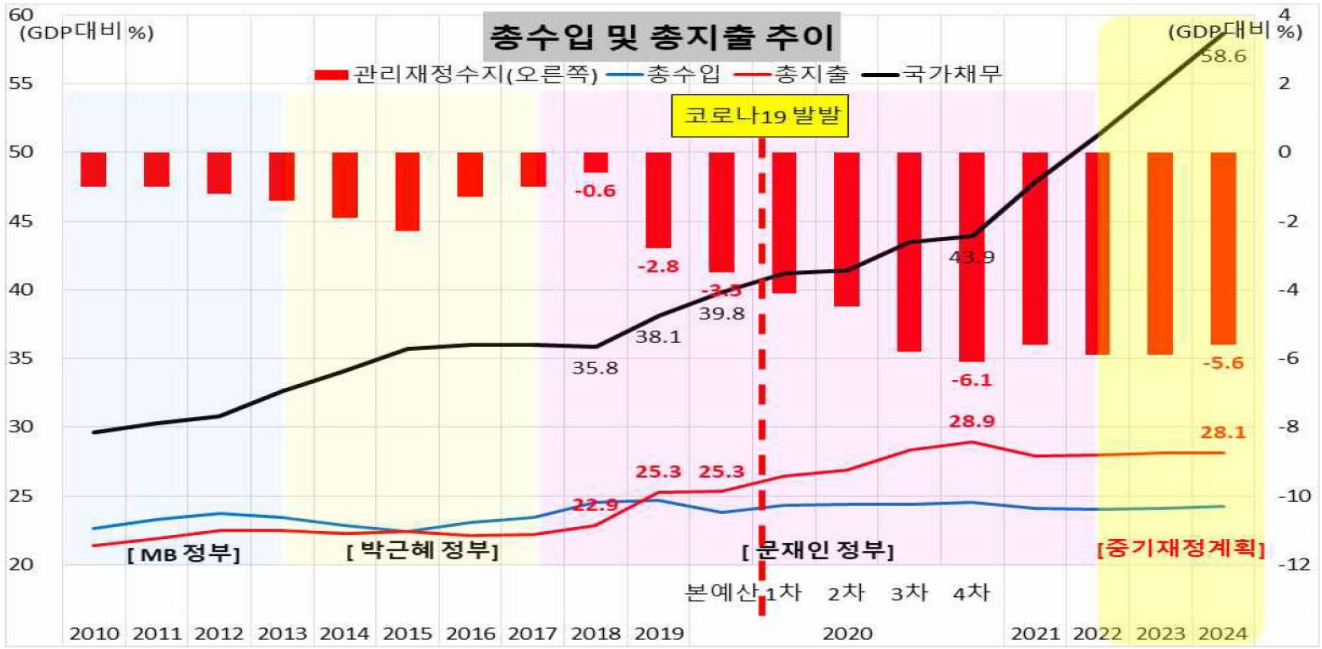

코로나 시기임에도 기승전 재정건전성 강조.

-> 어느 정도 국채 증가는 문제 없다. 감세와 지출감소가 문제다.

재정 보수주의자 전략. 고령화 복지 지출 증가로 장기 재정건전성 악화 -> 복지지출 축소 추진

◆ 정부가 사용한 재정준칙(총지출 증가율=경상성장률)을 적용시 정부 전망과의 격차 대폭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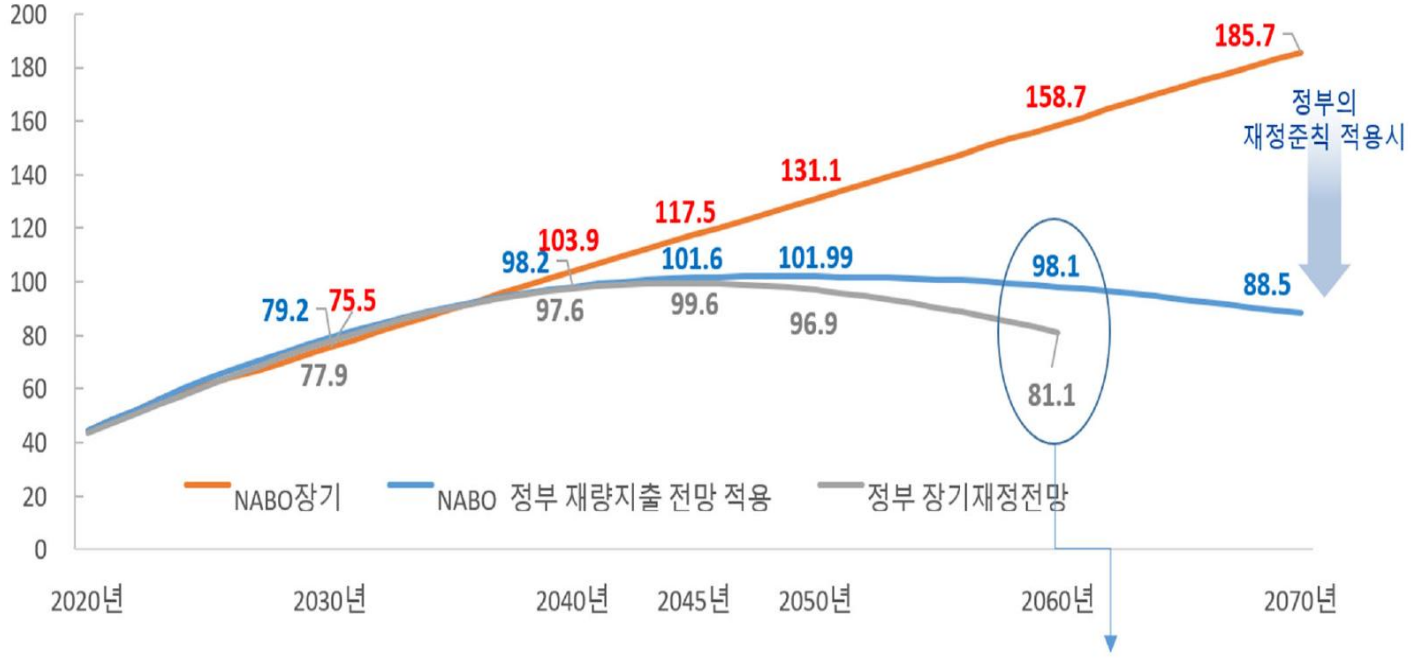

(박형수, 한국경제학회 발표)

- 정부가 일부러 가정을 잘못 설정해서 미래 국채 증가를 과소 전망했다고 비판

고령화 장기전망 시, 증세를 아예 고려하지 않음(NABO 전망)

(단위: %)

구분		'20	'30	'40	'50	'60
정부	총수입	24.4	24.8	24.9	24.2	23.4
	총지출	25.9	27.4	27.4	27.4	27.4
	- 의무지출	13.0	15.6	18.4	20.4	21.6
	- 재량지출	13.0	11.8	9.1	7.0	**5.8**
나보	총수입	22.7	24.5	24.2	23.4	22.6
	총지출	28.4	27.8	29.5	31.2	32.5
	- 의무지출	13.3	15.4	17.1	18.8	20.1
	- 재량지출	15.1	12.4	12.4	12.4	12.4
차이 (%P)	총수입	-1.7	-0.3	-0.7	-0.8	-0.8
	총지출	2.5	0.4	2.1	3.8	5.1
	- 의무지출	0.3	-0.2	-1.3	-1.6	-1.5
	- 재량지출	2.1	0.6	3.3	5.4	6.6

- **총수입 늘리는 것 중요.**

감세는 국채발행 하지 않으면 지출축소를 동반.
저성장과 양극화는 명약관화. 그런데 재정보수주의는 반대로 설명
그러나 감세를 주도한 미국, 장기적 효과는 양극화, 제조업 경쟁력 상실

미국의 소득세 최고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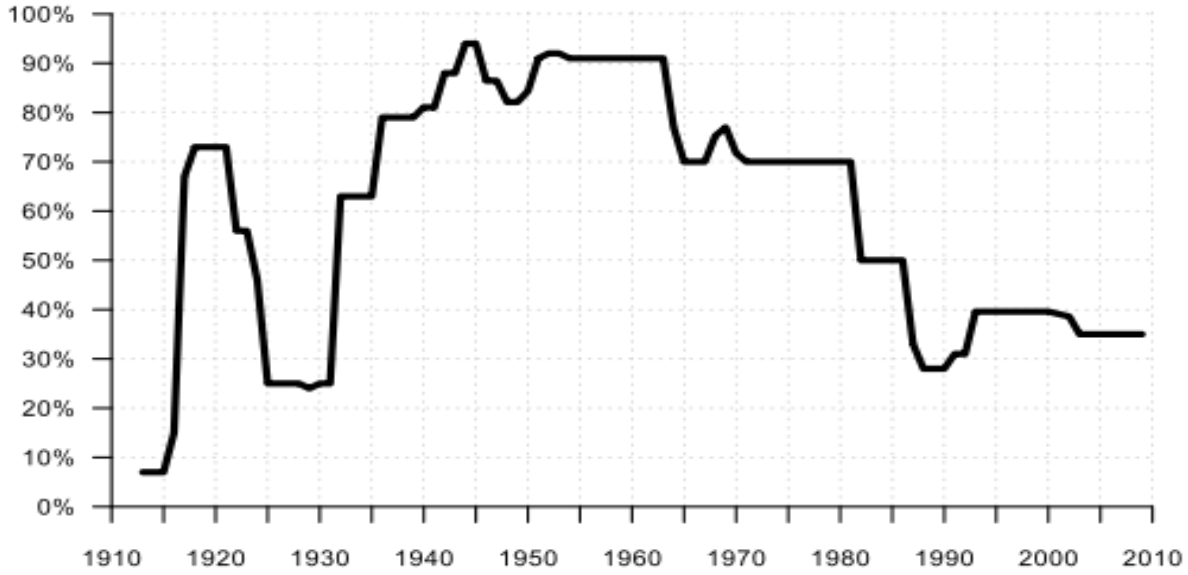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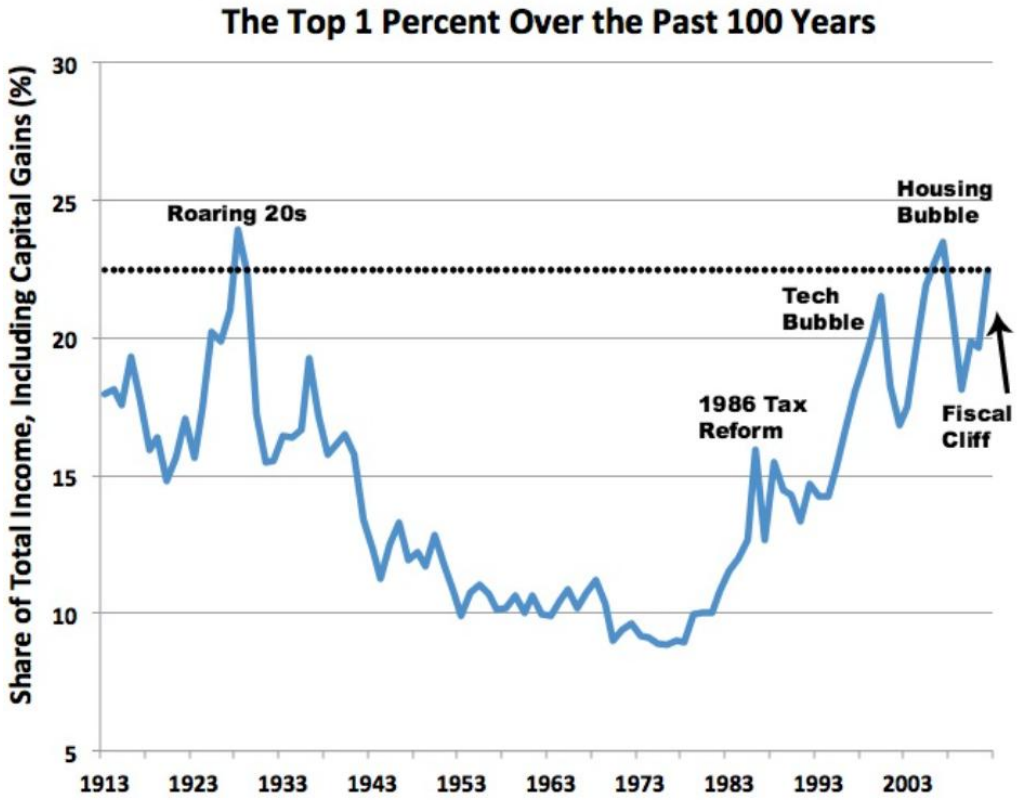

윤석열 정부는 철지난 재정 보수주의에 따라 감세 실시

2022년 고가주택자, 다주택자 종부세 & 양도세 감세-> 당장 2022년 영향

금투세 도입 유예 및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만 주식양도소득세를 납부.
대주주 판정 시 가족 지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규정 폐지.
최대주주에 한해 기타주주와 합산하지만 기타주주의 범위 축소.

대기업 법인세 감세 -> 2023년부터 영향
원안은 최고세율 인하(25%->22%)였으나 전구간 1%p 인하로 합의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상향 /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
첨단산업 대규모 세액공제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축소 /가업승계특례

2024년 금투소득세 폐지

- **-> 그 결과 세수 위축, 세수결손 발생. 그에 따라 지출 허리띠 졸라맴.**

윤석열 정부 감세로 인한 국세 수입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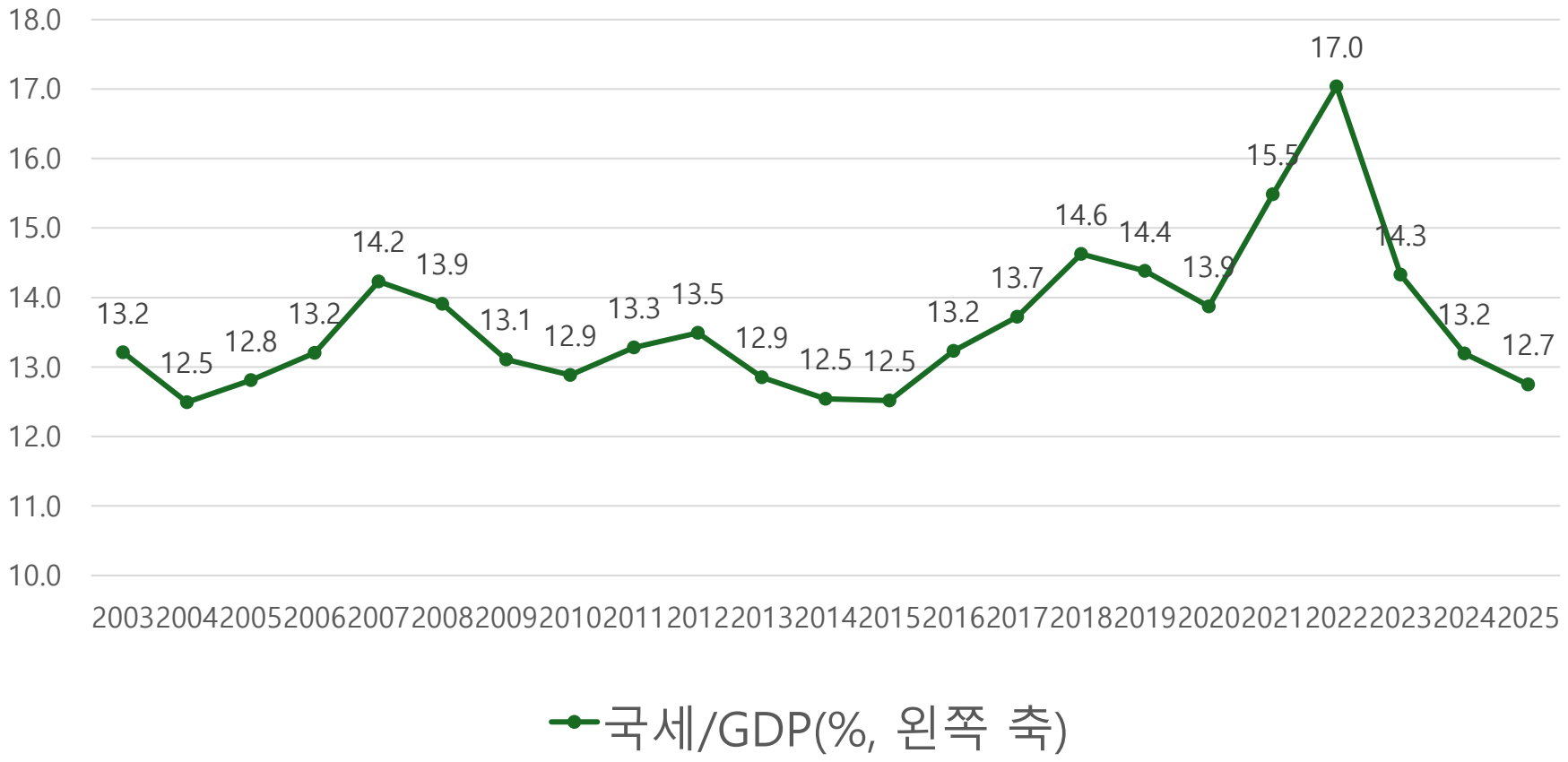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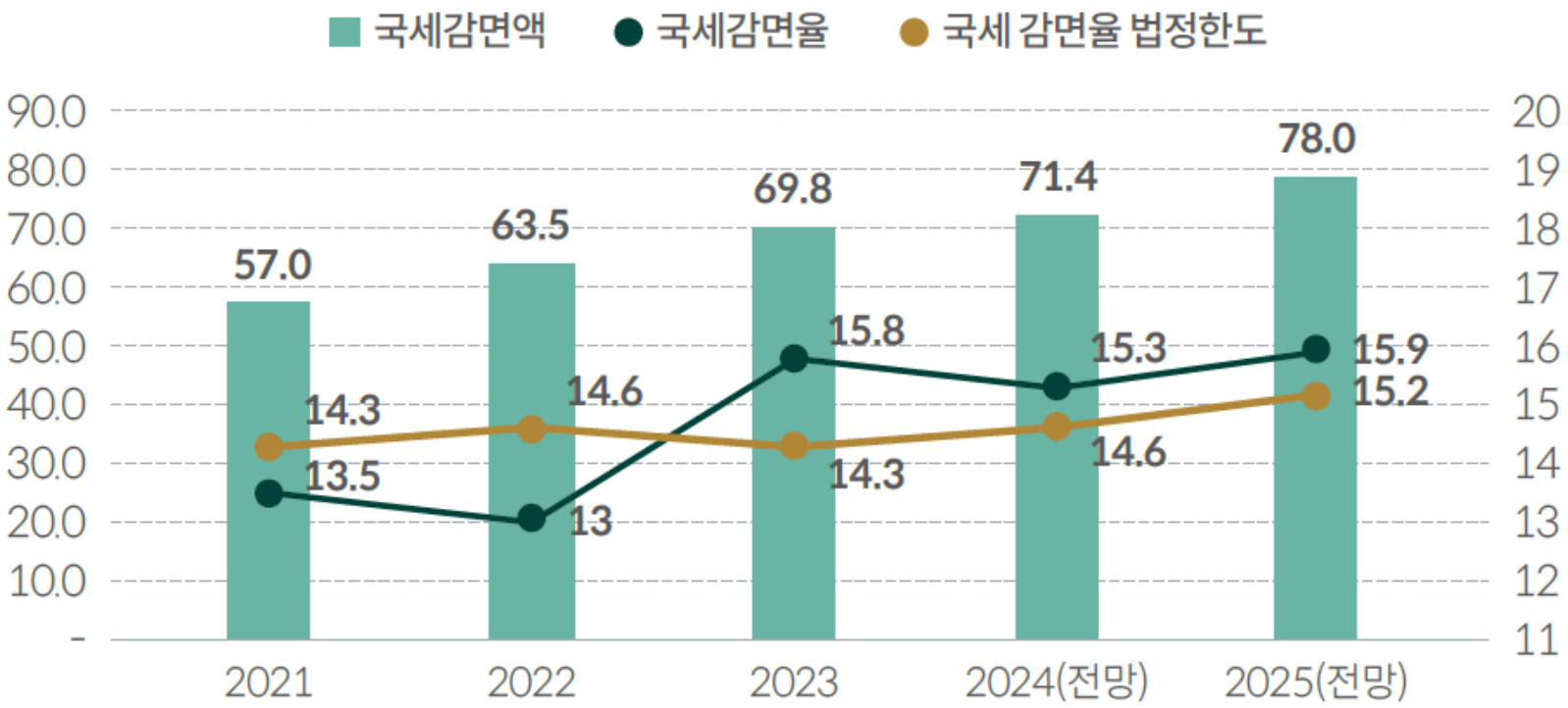

출처: 각 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 감세로 인한 절대적 세수 감소: 특히 자본소득 감세

단위: 조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9-22 증감	22-24증감
총 국 세	293	286	344	396	344	337	102	-59
소 득 세	84	93	114	129	116	117	45	-11
·종합소득세	17	16	16	24	21	20	7	-4
·양도소득세	16	24	37	32	18	16	16	-16
·근로소득세	38	41	47	57	59	61	19	4
법 인 세	72	56	70	104	80	63	31	-41
상속증여세	8	10	15	15	15	15	6	1
부가가치세	71	65	71	82	74	82	11	1
개별소비세	10	9	9	9	9	9	0	-1
증권거래세	4	9	10	6	6	5	2	-2
인 지 세	1	1	1	1	1	1	0	0
과년도수입	6	4	5	7	6	7	1	-1
교통에너지환경세	15	14	17	11	11	11	-3	0
관 세	8	7	8	10	7	7	2	-3
교 육 세	5	5	5	5	5	5	0	1
종합부동산세	3	4	6	7	5	4	4	-3
주 세	4	3	3	4	4	3	0	0
농 특 세	4	6	9	7	7	7	3	0

법인세 비중*
20.8
20.7
21.5
22.3
24.2
24.6
19.4
20.5
26.2
23.4
18.6%
근로소득세 비중*
*총국세 대비
12.4
12.4
12.8
12.8
12.9
13.1
14.3
13.7
14.5
17.2
18.1%
근로소득세
25.4
27.1
31.0
34.0
38.0
38.5
40.9
47.2
57.4
59.1
61.0조원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년
연합뉴스
자료: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

2022년, 2023년 구간별 근로소득세 유효세율을 보면, 근로소득세 부담이 커진 것이 아니라 법인세 부담이 약화된 것.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2년				2023년			
	총급여	결정세액	평균세율	1인당 세액	총급여	결정세액	평균세율	1인당 세액
1천만 이하	14,500,588	11	0.00%	846,154	14,344,367	10	0.00%	833,333
1.5천만 이하	16,877,900	1,990	0.00%	11,182	16,430,105	1,904	0.00%	11,202
2천만 이하	23,753,323	53,219	0.20%	64,578	23,264,376	52,007	0.20%	64,474
3천만 이하	105,447,846	576,956	0.50%	199,299	104,958,385	529,590	0.50%	187,327
4천만 이하	106,273,736	1,390,385	1.30%	600,850	115,903,083	1,257,773	1.10%	531,879
4.5천만 이하	47,433,741	1,091,792	2.30%	1,110,394	51,330,011	1,018,992	2.00%	1,018,967
5천만 이하	44,027,097	1,301,937	3.00%	1,514,611	47,434,621	1,250,162	2.60%	1,412,735
6천만 이하	79,398,501	3,075,333	3.90%	2,200,305	85,433,744	3,047,716	3.60%	2,086,586
8천만 이하	126,445,430	6,905,400	5.50%	3,822,640	137,015,112	6,980,087	5.10%	3,627,351
1억 이하	94,644,534	7,654,037	8.10%	7,231,630	102,881,980	7,654,743	7.40%	6,746,329
2억 이하	149,445,877	20,005,994	13.40%	17,442,930	160,004,466	20,629,278	12.90%	16,996,526
3억 이하	25,488,893	5,706,460	22.40%	53,150,095	26,891,362	5,930,307	22.10%	52,707,749
5억 이하	15,517,001	4,249,038	27.40%	102,250,945	16,740,133	4,515,242	27.00%	101,055,079
10억 이하	10,137,266	3,251,283	32.10%	213,296,792	10,531,253	3,312,883	31.50%	208,843,409
10억 초과	9,896,220	3,882,045	39.20%	804,902,550	9,433,467	3,603,203	38.20%	750,667,292

(출처 : 2024 국세통계연보)

중과세율 대상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봄

<2022년과 2023년 개인 주택 기준 종부세 과세 인원과 세액 규모(명, 백만원)>

	일반세율				중과세율 (22년-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23년-과표 12억원 초과 3주택 이상)		개인분 총합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외 (22년-조정대상지역 제외한 2주택자/23년-2주택자+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 이상)					
연도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2022년	235,336	256,225	420,298	438,196	483,454	1,890,721	1,139,088	2,585,142
2023년	111,315	91,267	237,041	273,148	2,597	91,959	350,953	456,374
증감률	-52.7	-64.4	-43.6	-37.7	-99.5	-95.1	-69.2	-82.3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감세 시도

- **배당소득세율 인하, 자사주 매입 세액공제 시도-> 주식투자 유인, 주가 상승.**
- 주장: 법인세와 자본과세를 완화해야, 기업의 실물투자와 가계의 주식투자가 회복. 감세 낙수효과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 방향

- 정부는 「❶**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❷**투자자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❸**주주가치 존중 문화 확산**」을 **3대 축**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추진 중
- 우리 자본시장이 '**기업과 투자자가 상생하는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추가 과제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

- 금융투자가 대중화되면서 자본과세 감세가 새로운 양태로 추진.
- 대자본에게 유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미투자자들 호응
- 그러나 주주환원 감세는 조세정의에 위배될 뿐 아니라 성장에도 부정적

윤석열 정부의 상속세 감세 시도

처음 제시한 감세안

상속세 최고세율 50%→40%…'중산층 혜택' 포장한 부자감세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25년 만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자녀공제 5천만원→5억원 상향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전면 폐지

20억 아파트 상속해도 세금 '0원'… 상속세만 2조 감세 전망

정부, 유산취득세 개편안 발표

박수지, 안태호 기자

수정 2025-03-13 07:26 등록 2025-03-12 18:26

유산취득세 개편시 예상되는 상속세액 변화

최근 정부가 제출한「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

1. 과세 방식의 변경(유산세 → 유산취득세)

- 정부 개정안은 상속세 과세대상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상속취득재산)으로 하고, 상속취득재산의 범위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를 고려하여 규정함(안 제3조의2, 안 제 3조)

2. 인적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 금액 상향

- 현행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폐지함.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받은 재산만큼 공제하되, 법정상속분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10억원 한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공제함. 그 밖의 인적 공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등인 경우 5억원, 그 외의 경우 2억원으로 하고, 수유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등은 5천만원, 그 외의 친족은 1천만원으로 하여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상향 조정함. (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3. 상속재산 신고 및 과세방법

- 상속재산 분할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까지로 규정함.

상속세 개정안의 문제점

- 이번 상속세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피상속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자의 상속재산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임. 정부는 상속인이 받은 만큼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과세 형평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산취득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논의된 바 있으나, 당시 제안된 개선 사항은 이번 개정안에서 반영되지 않았음. 특히 최근 부자감세 기조로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세수 중립성 확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우려됨(세수 위축)**

- **자산 규모 크고 자녀 많을 수록 상속세 감면액 많아짐 (부자 감세)**

현재 상속세는 초부자 감세 제도. 따라서 상속세 감세는 초부자 혜택(2023년 기준)

과세표준	피상속인수	1인당 상속세 구조(백만원, %)				피상속인 비중(%)	상속세수 비중(%)
		상속재산	과세표준	결정세액	실효세율		
1억 이하	3,527	838	50	4	0.5	17.7	0.1
3억 이하	4,747	970	193	24	2.4	23.8(41.5)*	0.9(1.0)
5억 이하	3,002	1,163	394	57	4.9	15.1(56.5)	1.4(2.4)
10억 이하	3,878	1,570	712	132	8.4	19.4(76.0)	4.2(6.6)
20억 이하	2,618	2,398	1,394	346	14.4	13.1(89.1)	7.4(13.9)
30억 이하	921	3,472	2,438	706	20.3	4.6(93.7)	5.3(19.2)
50억 이하	638	5,242	3,800	1,281	24.4	3.2(96.9)	6.6(25.9)
100억 이하	359	8,112	6,885	2,567	31.6	1.8(98.7)	7.5(33.4)
500억 이하	225	22,261	18,543	7,612	34.2	1.1(99.9)	13.9(47.3)
500억 초과	**29**	**472,750**	**481,025*** **	**222,911**	**47.2**	**0.1(100)**	**52.6(100)**
(30억 초과)	**1,251**	**19,998**	**18,399**	**7,926**	**39.6**	**6.3**	**80.7**
전체	**19,944**	**2,600**	**1,706**	**616**	**23.7**	**100**	**100**

주: * 피상속인 비중 열의 괄호안은 누적 비중. ** 2억 이하는 20%에서 10%로 인하, 2억 초과~3억 이하는 20%로 변화 없음. *** 과표가 상속재산보다 큰 것은 증여 조정 결과. 출처: 국세통계 (국세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3. 윤석열 정부 감세 결과

• 재정 지출 축소

(단위: 조원, %)

구 분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본예산 (a)	2025년 예산안 (b)	증감(b-a)	
					금액	증감률
총수입	617.8	573.9	612.2	651.8	**39.6**	**6.5**
국세수입	395.9	344.1	367.3	382.4	15.1	4.1
세외수입	30.8	28.5	28.2	36.6	**8.4**	**29.8**
기금수입	190.8	201.1	216.7	232.8	16.1	7.4
총지출	682.4	610.7	656.6	677.4	**20.8**	**3.2**
예산	439.6	413.1	438.3	459.9	12.6	2.9
기금	231.2	196.5	218.4	226.5	8.2	3.7
의무지출	332.7	341.8	347.4	365.6	18.2	5.2
재량지출	349.7	297.3	309.2	311.8	**2.6**	**0.8**

< 2024회계연도 총세입 결산 결과 >

(단위 : 조원, %)

구 분	'23년	'24년		증 감			
	결 산	예 산	결 산	'23년 결산 대비	(%)	'24년 예산 대비	(%)
■ 총세입	497.0	550.0	**535.9**	39.0	7.8	△14.1	△2.6
• 국세수입	344.1	367.3	**336.5**	△7.5	△2.2	△30.8	△8.4
• 세외수입	152.9	182.7	**199.4**	46.5	30.4	16.7	9.1

* 구성 항목별 계산금액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이하 표 동일)

< 2024회계연도 총세출 결산 결과 >

(단위 : 조원, %)

구 분	'23년 결 산	'24년 예산현액* (A)	'24년 결 산 (B)	집행률 (B/A)	증 감 '23년 결산 대비	증 감 (%)
■ 총세출	490.4	554.0	**529.5**	95.6	39.0	8.0
• 일반회계	405.9	451.6	**435.4**	96.4	29.5	7.3
• 특별회계	84.5	102.4	**94.0**	91.8	9.5	11.2

* 예산현액 : 예산, 전년도 이월액 등이 포함

내수부진으로 인한 저성장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2020년 기준)

(계절조정계열 전기대비, %)

	2023p				2024p				2025p	
	1/4	2/4	3/4	4/4	1/4	2/4	3/4	4/4	1/4	
국내총생산 (GDP)	0.4 (1.1)	0.6 (1.0)	0.8 (1.4)	0.5 (2.1)	1.3 (3.3)	-0.2 (2.3)	0.1 (1.5)	0.1 (1.2)	-0.2	(-0.1)
민간소비	0.5	-0.3	0.1	0.4	0.7	-0.2	0.5	0.2	-0.1	(0.5)
정부소비	0.4	-2.1	0.3	0.5	0.8	0.6	0.6	0.7	-0.1	(1.9)
건설투자	0.6	0.2	1.9	-3.8	3.3	-1.7	-3.6	-4.5	-3.2	(-12.2)
설비투자	-1.4	0.4	-2.0	2.8	-2.0	-1.2	6.5	1.2	-2.1	(4.2)
지식재산생산물투자	-0.2	1.0	0.8	-0.2	0.8	-0.9	0.0	0.3	0.3	(-0.3)
재고증감 1)	0.2	-0.4	-0.3	-0.4	-0.3	0.3	0.3	0.0	0.0	(0.6)
수출	4.2	1.1	1.9	3.9	1.8	1.2	-0.2	0.8	-1.1	(0.6)
수입	3.9	-1.8	0.3	1.6	-0.4	1.6	1.6	0.1	-2.0	(1.2)

주 : 1) 재고증감은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p) 2) ( ) 내는 원계열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내수부진 감수하고 지출축소. 국채 증가 최대한 억제

구 분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본예산 (a)	2025년 예산안 (b)	증감(b-a)	
					금액	증감률
통합재정수지	△64.6	△36.8	△44.4 (△1.8)	△25.6 (△1.0)	18.8	0.8%p
관리재정수지	△117.0 (△4.1)	△87.0 (△5.0)	△91.6 (△3.6)	△77.7 (△2.9)	13.9	0.7%p
국가채무(D1)	1,067.7 (49.4%)	1,134.8 (49.8%)	1,195.8 (47.4%)	1,277.0 (48.3%)	81.3	0.8%p

< 2024회계연도 중앙정부 재정수지 결산 결과>

(단위 : 조원)

구 분	'23년	'24년		증 감	
	결 산	예 산	결 산	'23년 결산 대비	'24년 예산 대비
■ **총수입** (A)	573.9	612.2	**594.5**	20.5	△17.7
■ **총지출** (B)	610.7	656.6	**638.0**	27.3	△18.6
■ **통합재정수지** (C=A-B) (GDP 대비, %)	△36.8 (△1.5)	△44.4 (△1.8)	**△43.5** **(△1.7)**	△6.8 (△0.2%p)	0.9 (0.1%p)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D)	50.3	47.2	**61.2**	11.0	14.0
■ **관리재정수지** (E=C-D) (GDP 대비, %)	△87.0 (△3.6)	△91.6 (△3.6)	**△104.8** **(△4.1)**	△17.7 (△0.5%p)	△13.1 (△0.5%p)

* 명목GDP('25.3.5. 한은 발표 기준) → ('23년) 2,401.2조원/ ('24년) 2,549.1조원(잠정)

< 2024회계연도 국가채무 결산 결과 >

(단위 : 조원, %)

구 분	'23년 결 산	'24년		증 감	
		예 산	결 산 (잠정)	'23년 결산 대비	'24년 예산 대비
■ 국가채무 (❶+❷)	1,126.8	1,195.8	**1,175.2**	48.5	△20.5
(GDP대비, %)	(46.9)	(47.4)	**(46.1)**	(△0.8%p)	(△1.3%p)
❶ 중앙정부 채무	1,092.5	1,163.0	**1,141.2**	48.6	△21.9
- 국채	1,091.1	1,161.7	**1,139.8**	48.7	△21.9
(국고채)	998.0	1,046.0	**1,047.9**	49.9	1.9
(국민주택채권)	81.6	83.7	**79.1**	△2.5	△4.6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11.5	32.0	**12.8**	1.3	△19.2
- 차입금	1.2	1.2	**1.2**	-	0.0
- 국고채무부담행위	0.2	0.2	**0.2**	△0.0	△0.0
❷ 지방정부 순채무*	34.3	32.8	34.1	△0.2	1.3

* 지방정부의 전체 채무 중 중앙정부에 대한 채무를 제외

그러나 적자성 국채 증가 문제.
부채 증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출 감소가 문제

금융성 국채와 적자성 국채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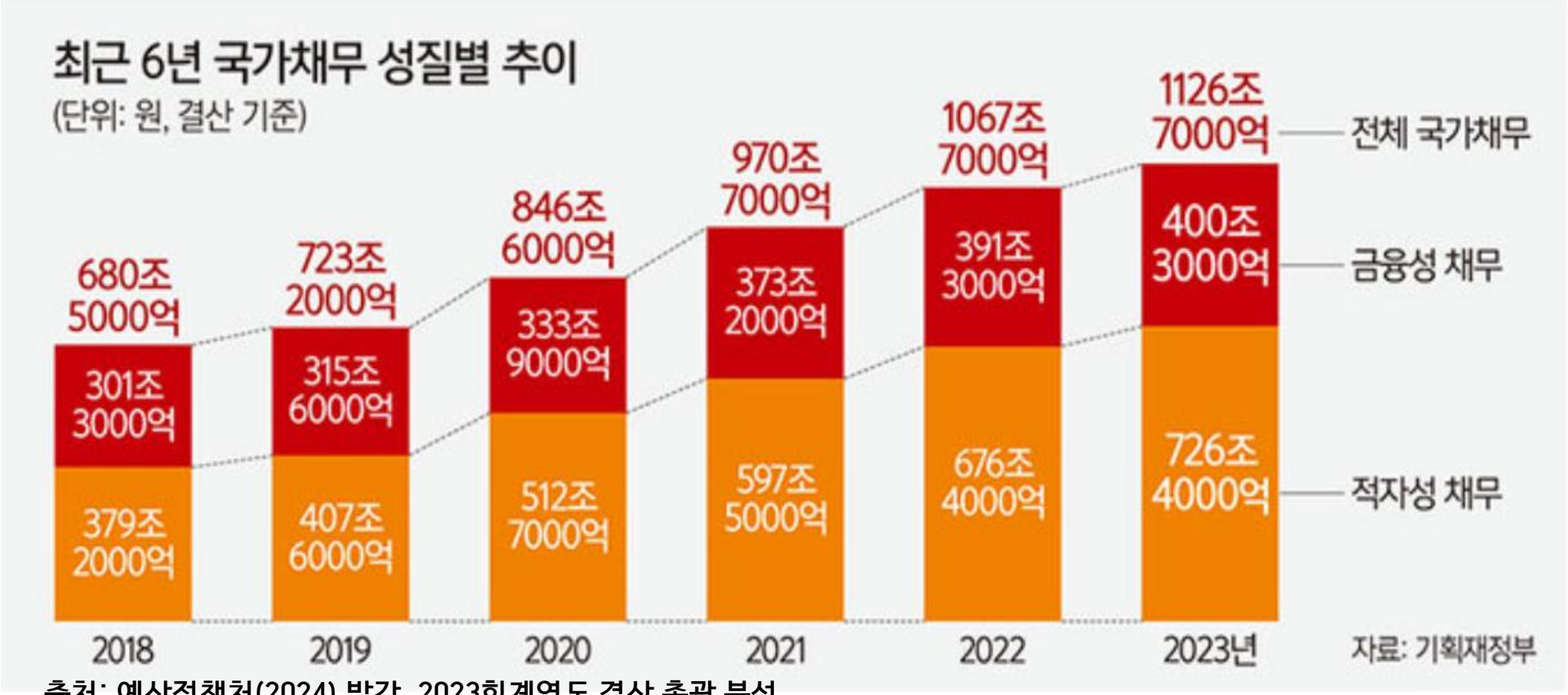

출처: 예산정책처(2024) 발간,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4. 민주당의 부화뇌동도 문제

- 종부세: 문재인 정부 말 1세대 1주택 완화
- 법인세: 윤석열 정부 법인세 감세 시 더욱 큰 규모의 세액 감세
- 금융투자소득세: 윤석열 정부 폐지 동의
- 소득세: 소득세 물가연동제 제안
- 상속세: 배우자 상속제 폐지
- 밸류업 감세 시도

<밸류업 감세의 문제점>

외환위기 이후 "높은 자본소득분배율": 이윤몫이 커짐.

외환위기 이후 자본소득분배율 상승.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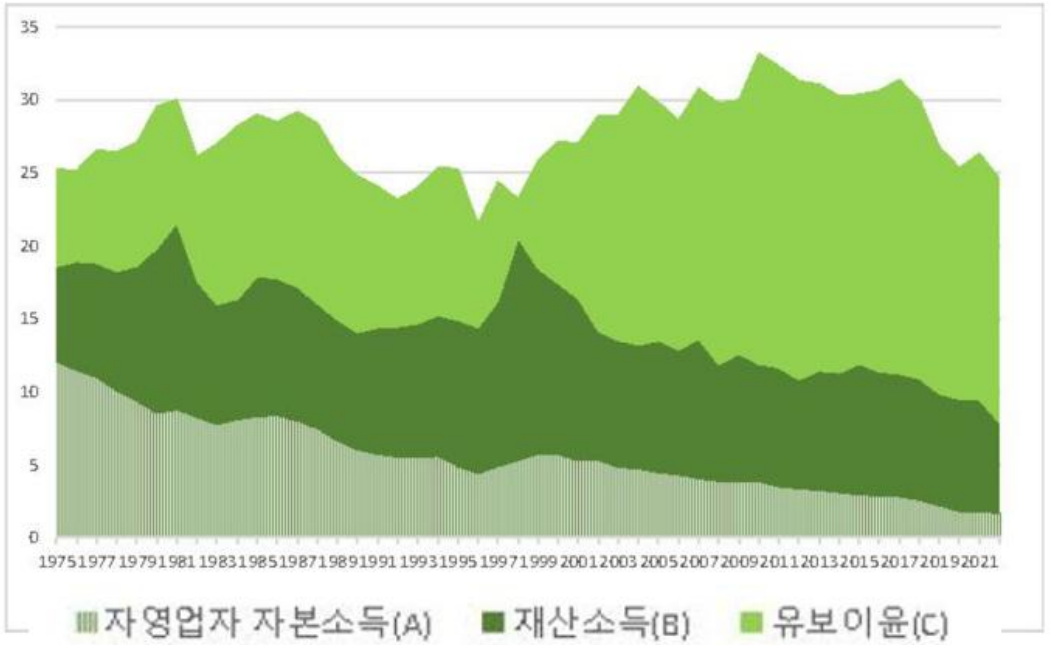

자영업자 자본소득(A) 재산소득(B) 유보이윤(C)

자본소득분배율 구성

	자영업자 자본소득	사외분배 재산소득	유보이윤	자본소득분배율 (A)	(B)
1975-1996	6.1	9.3	9.7	19.0	25.1
1997-2022	3.3	8.5	17.2	25.7	28.9
1998-2022	3.3	8.5	17.3	25.8	29.1

(A) 그림 B+C, (B) A+B+C

출처: 이제민(2023), 자본이득을 감안한 자본소득분배율의 장기 추이, 경제발전연구 제29권

외환위기 이후 기업 저축률이 높아지고
가계는 저축률 감소(소비성향이 높아졌다기보다 소득이 줄어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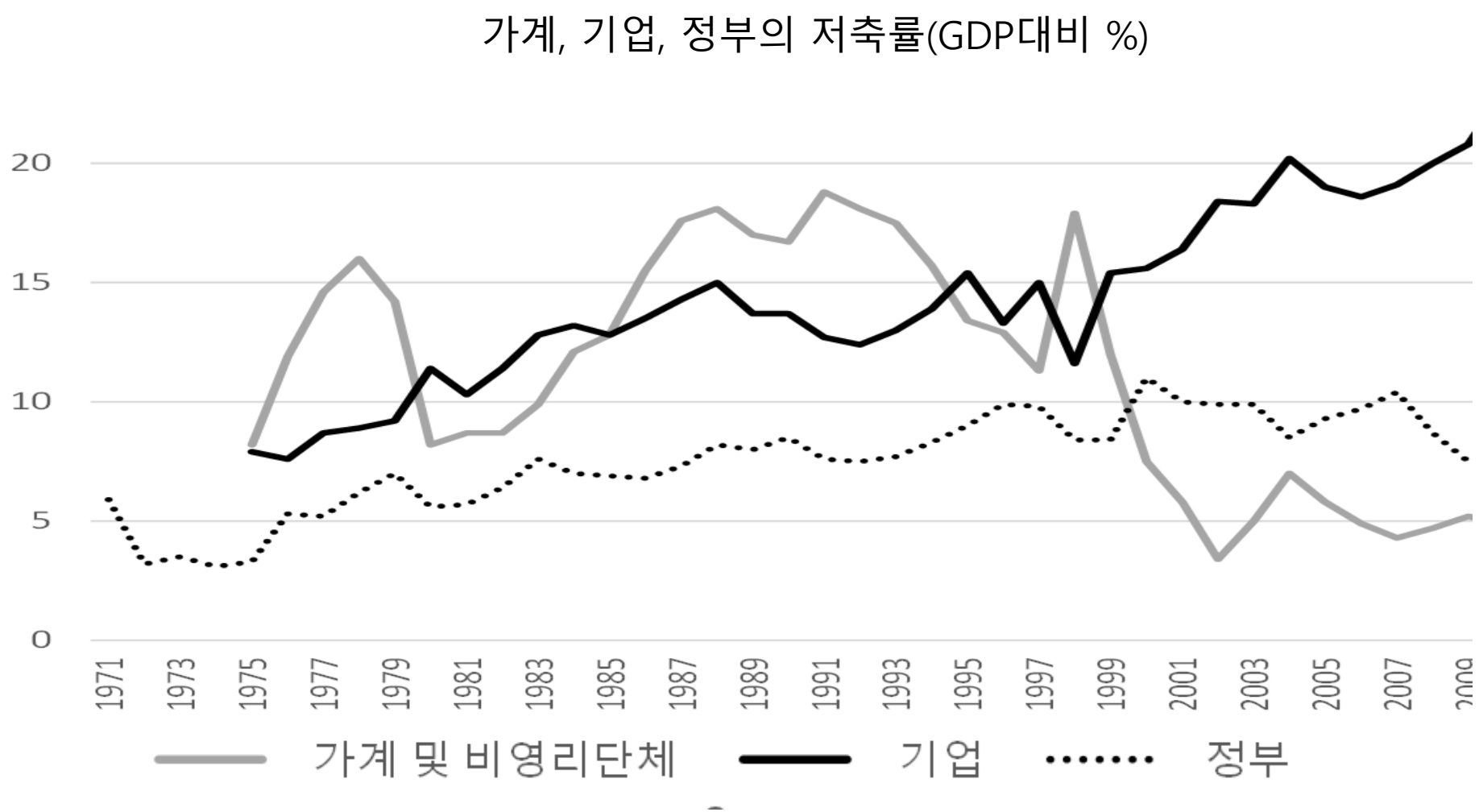

그런데 "높은 자본소득분배율"에 대비되는 기업의 낮은 수익성.

- 전체소득에서 법인이 가져가는 것을 많지만, 자기자본 수익성은 낮음.

[표1] 주요국 상장기업 10년 평균 ROE·PBR·PER('14~'23)

구 분	한국	대만	중국	인도	신흥 평균	미국	일본	영국	선진 평균
ROE(%)	7.98	13.58	11.48	12.80	11.08	14.85	8.34	9.62	11.55
PBR(배)	1.04	2.07	1.50	3.32	1.58	3.64	1.40	1.71	2.50
PER(배)	14.16	15.95	13.09	25.62	14.32	21.78	16.86	16.09	19.69

* 출처: Bloomberg / ** 현행 PBR·PER 기준

- 주식시장 부진은, 북한 문제라는 정치적 위험성, 그리고 경제성장률 하락, 기업의 낮은 수익성이 결합된 결과. 기업은 낮은 수익성은 기업의 문제.

외환위기 이후 노동을 착취해서 쌓아둔 자본을 주주에게 세금없이 넘겨 주려는 셈.

<참고> 일본의 밸류업 정책 시사점: 세제 지원은 핵심이 아님

- **정책의 배경 배경: 한국과 비슷. 낮은 PBR, 약한 주주환원 등**

1) PBR 1배 미만 기업 개혁 압박

- 일본 도쿄증권거래소(TSE)는 **PBR 1배 미만인 기업에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

(2) 주주환원 정책 강화 (배당 & 자사주 매입 확대)

- 기업들은 **배당 확대 및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 가치를 높이도록 압박받고 있음**.
- 2023년 이후 일본 기업들의 배당 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이 점진적으로 상승.

(3) 내부 유보금(현금) 축소 및 자본 활용 촉진

- 일본 기업들은 **과도한 현금을 보유**. 정부는 **이 자금을 투자(연구개발, M&A 등)나 주주환원(배당, 자사주 매입)에 활용할 것**을 요구.

(4) 기업 지배구조(거버넌스) 개혁 강화

- 기업이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사회(보드 멤버) 개혁, 경영진의 책임 강화** 등의 개혁 추진.
- 외부 이사의 비율을 늘리고, 경영진의 성과와 보상을 주가 및 기업가치에 연계하는 구조 도입.

- **금융투자소득세 실시 (소액투자자만 비과세)**
- 소액투자 비과세(NISA) 혜택 정도

연간 투자 한도: 120만 엔-> 360만 엔

(총 투자 한도: 기존 600만 엔-> 1,800만 엔)

비과세 기간: 최대 20년-> 무기한

- 우리나라처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하지 않았음.
- 폐지의 가장 큰 이유로 제시된 것은, 소수의 큰 손이 한국을 떠나면 가격이 폭락한다는 우려.
- 그런데 자신들이 떠나면 가격이 폭락해서 자신들이 손해를 볼텐데 그렇게 할까?
- 일부 그런 현상이 있더라도 투명성 제고는 더욱 큰 성과.

➢ 일본 소득세 포괄주의로 금융투자소득세 걷고 있음.

5. 한국경제 당면 과제와 증세 필요성

한국경제 저성장과 양극화 위기

- 산업화와 민주화: 재벌체제, 불균형 성장 전략, 중산층의 등장
- 신자유주의 개혁: 재벌과 금융자본의 결합, 저성장과 양극화, 자산격차 확대
- 중산층의 위축
- AI 확산, 에너지전환, 인구구조 변화
- :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 강화, 저성장과 양극화 더욱 심화 우려

한국경제 개혁 방향

- **경제민주화와 복지 강화 (전통적 진보 아젠다)**
- - 노동차별 완화, 재벌 규제 (혹은 대타협), 금융 통제, 공기업 강화
- - 양극화 문제 해결은 그 자체로도 시급하고 성장 효과도 있어서 중요.
- - 복지 확대는 좋은 일자리 확대, 소비 확대할 것이므로 중요.

- **진보적 산업정책 필요 (제조업, 서비스업 고도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 - 고령화 시대, 고령인구 부양 부담의 증가.
- - 청년, 여성, 고령자의 고용률 높여야 함. 좋은 일자리 만들어야.
- - 감세, 규제완화,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인프라 확대, 혁신과 역량 강화, 복지확대에 기반한 일자리 확대.

- **적극적 조세정책(충분한 세입과 재정지출)의 중요성**

- 정부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음.
- - 각 부문 규제정책: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
- - 재정조세정책, 통화금융정책, 무역정책, 투자정책, 환율정책 등
- 신자유주의 재정보수주의로 인해 재정조세정책보다 통화금융정책
- (논리: 재정정책은 민간활동을 구축, 재정적자는 미래 세대의 빚이라는 이데올로기)
- - 그러나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통화금융정책은 투기와 양극화 경향

- 향후 복지강화와 진보적 성장 정책을 위해서는 재정조세정책이 중요
- **1. 조세, 국채 -> 재원 마련 -> 복지 강화와 성장을 추진 (정책금융도 활용)**
- **2. 조세(소득세와 자산세)를 통한 불로소득 환수 -> 투기 활동을 억제. 생산적 경제활동 장려**

조세재정의 미약한 재분배 기능

(단위: %)

	시장소득 (a)	처분가능소득 (b)	불평등개선효과 (a-b)/a
한국(2021년)	0.405	0.333	17.8
한국(2020년)	0.405	0.331	18.3
OECD(2020년)	0.469	0.323	31.1
북유럽형	0.458	0.268	41.5
서유럽형	0.489	0.281	42.5
남유럽형	0.519	0.327	37
영미형	0.478	0.322	32.6

- **조세·공적 이전소득 불평등 감소 효과**
  - 2016년 11.4%
  - 2021년 17.8%
  - OECD 회원국 평균(31.1%)
-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불평등도**
  - **37개 OECD 회원국 12위**

주 1: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사적이전지출.
2: 공적 이전소득은 공적연금,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지원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정부의 사회수혜금.
3: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세금+공적 이전소득

자료: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산출.

●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방향

● 조세정의와 세수세반 파괴하는 윤석열 정부 감세 원상복구

- 법인세 하위 구간 원상복구 및 강화, 과도한 투자세액 공제 정비
- 해외자회사 배당금 비과세 폐지(또는 배당소득 국내 투자 시 공제)
- 종부세, 양도세 원상복구, 부동산 공시가격 로드맵 원상복구
-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가업상속공제 강화 원상복구

● 불평등 완화, 고용 확대를 위한 누진적 보편 증세 추진

- 소득세, 법인세 등에서 누진도 증가와 전체적인 세수 증가
- -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와 상위 소득구간 과세 강화
- 부동산 투기 근절·토지공개념 실현 위한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증여세·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인하

다양한 증세 방안 존재(모든 소득이 가구에 귀속된다고 가정)

보편증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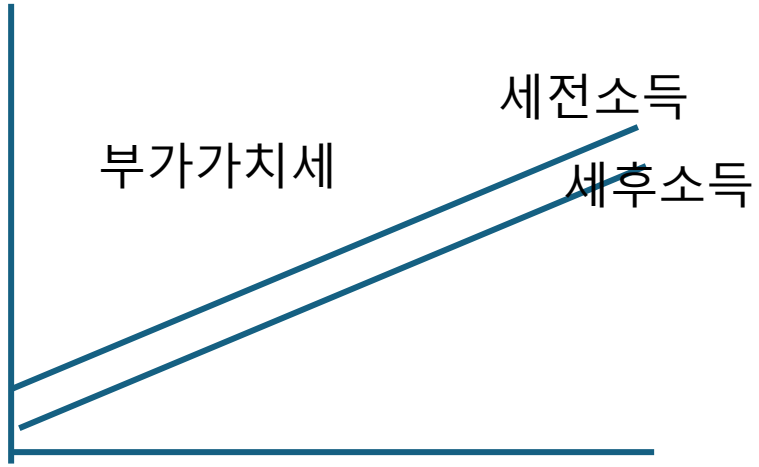

저소득층---> 고소득층(자본소득 많을 것임)

보편증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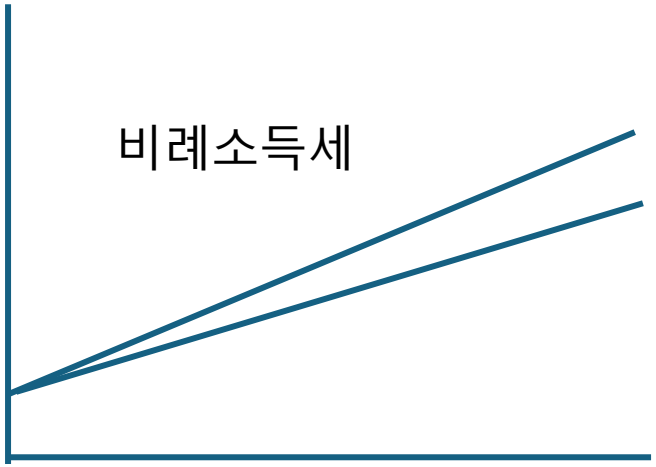

부자증세, 누진증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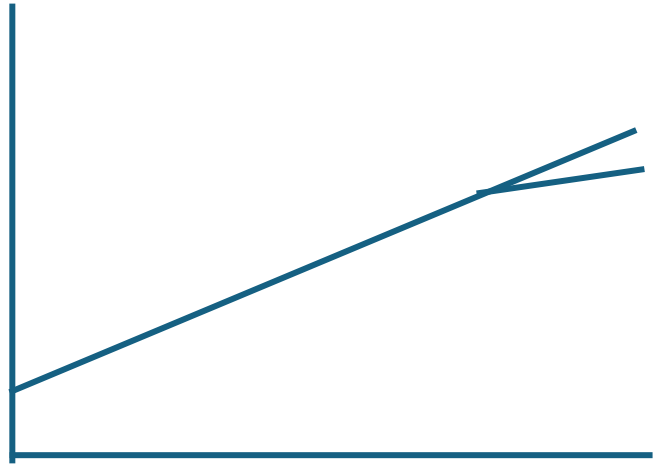

어떤 증세 방안이든 증세해서 저소득층에게 몰아주는 복지를 한다면 재분배는 개선.
그러나 불평등 완화효과는 다를 것. 불평등 완화효과는 누진도도 중요하고 세수 규모도 중요함.

바람직한 증세방안: 누진적 보편증세
누진증세 우선, 그러나 보편증세와 결합되어야
의미있는 복지국가 가능. 누진증세와 보편증세 동시에 추진도 바람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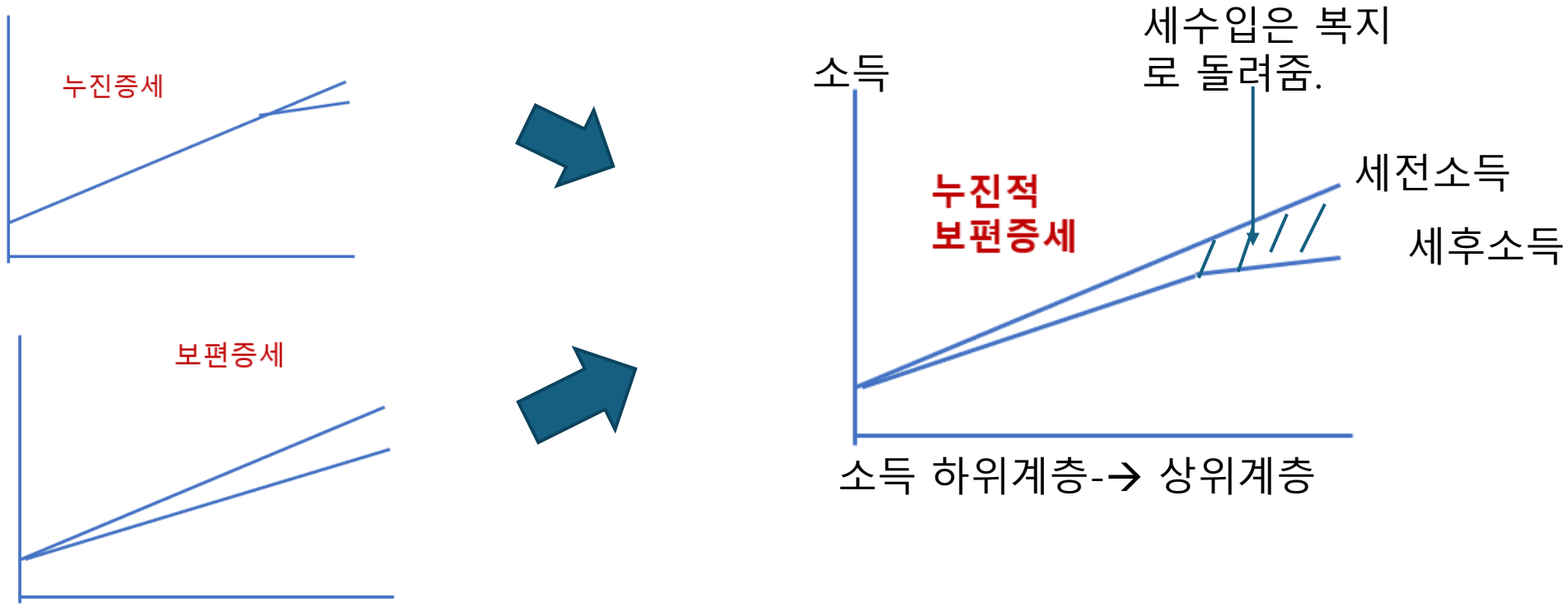

개혁과제 : 소득세 강화

1.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의 하향과 전 소득구간에서 세율 인상**
   - 초과누진세제 하에서는 저소득구간에서 세율이 인상되면 고소득층의 세부담도 더 많이 증가
   - 2022년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시작 과세표준은 근로자 평균소득 대비 21.6배(OECD 평균 7.4배)
2.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로 소득 유형 및 계층 간 과세형평성 제고**
   -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분리과세 기준금액(2천만원)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종합과세
3.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제제도 개편**
   -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되 인적 공제를 확대하여 가계 단위의 생계지원 기능 강화
   - 사업자의 소득포착률이 높아진 현실을 고려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폐지
   - 사업자 과표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점진적으로 축소·폐지

개혁과제 : 법인세 강화

1. **최고세율 적용 시작 과표구간 하향조정과 단순화**
   - 최고세율을 25%로 유지하되 세율 구조를 2~3단계로 단순화
   - 최고세율과 최저세율의 격차 축소
2. **법인세제의 투자·고용효과 제고와 세수기반 확충**
   -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중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 축소
   -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액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 상향 조정
   - 투자와 고용효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개편
   -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제도의 발전적 개편 필요

     (2022년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와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각각 6.2억원과 39.1억원)

실물투자, 혁신투자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법인세율을 올리고, 선별적으로 강력하게 세액공제를 주는 것이 효율적.

개혁과제 : 다주택/고가주택 양도세, 종부세 강화

1. **가격안정 효과를 강조하기보다 불로소득 과세를 강조**
2.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과표 관리**
   -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통한 보유세의 조정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과세방식
   -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면서 세법 개정으로 세부담을 결정하는 방식

3.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린다"는 원칙이 기존 진보진영의 합의인데,
- -> "거래세는 낮추고, 고가와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보유세를 올린다"는 어떨지.
- 임대사업자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세제혜택은 적정 수준으로 유지

<종부세 논란: 근본적 보유세 개편 필요한가?>
완벽한 대안이 없음. 종부세는 장점이 많음. 현 체제 유지하고 개선

첫째, 일정 규모 이하 1세대 1주택 이하 가구에 대해 비과세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생각. 조사에 따르면(첨부), 국민의 90%가까이가 내 집을 소유하고 싶다고 생각. 소득도 일정부분까지는 면세해 주듯이, 세입자도 일정부분의 월세는 세액공제해 주듯이. 일정 가액 이하 1세대 1주택 비과세 타당(일정 가액 기준이 문제). 1세대 2주택 비과세 허용하는 것은 피치못할 상황에서만 주어야 함(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

둘째, 그렇다고 1세대 1주택 종부세 폐지를 허용한다면 종부세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 큼. 1주택자 중 초고가 아파트가 있을 것이고 그 가격 하위의 다주택자들도 비과세를 요구할 것.

셋째, 다주택자 중과세 유지 필요. 주택 수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만 바꾼다면 소형 주택 여럿을 독점하여 서민이 집 구하기 어렵게 만들 것. 공제 기준, 세율을 어떻게 설계?

현재의 제도를 바꾸기보다, 그 장점을 알리고, 최근 윤석열 정부 하에서 완화된 종부세를 다시 강화.

<논의가 필요한 부분>

첫째, 현재 종부세가 토지 과세와 비주거용 건물 과세가 약한 것은 문제. 이 쪽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음. 그 실태를 파악하여 과세 강화를 제안하는 것이 필요. 그러나 실행 방안에 있어서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도입이 낫지 않을지. 상가 부분은 투명성 확보와 세입자 권리 강화가 먼저이지 않을지.

둘째, 공시가격 현실화. 그런데 가격이 급등한 상태에서 공시사격 현실화하게 되면 보유세 부담이 커질텐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당분간 유지하여 완충수단으로 사용.

셋째, 실수요의 범위를 조금 확대할 필요 검토. 가령 인구소멸 지역의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다주택 중과세 완화(2주택 한정, 지금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음)

넷째, 민간임대에 대한 적정 의무와 혜택 설계 필요. 규제 수용하는 소형 민간임대 사업자(지금도 10년 장 기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혜택), 민간 협동조합 주택 등에 대해서는 약한 과세 적용

다섯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사용처를 바꾸자는 제안의 취지에는 찬성. 방법은 논의 필요. 현재는 지자체에 나누어 주고 있는데 이를 다른 곳으로 돌린다면 구멍나는 지자체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지도 생각해야.

개혁과제 : 상속세, 증여세 강화

1.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혁 필요**
   - 상증세는 생애주기의 과세와 조세체계의 관점에서 소득세와 연계하여 개편
   - 다양한 공제 제도로 인해 실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 가업승계에 대한 과도한 공제 축소: 재산의 취득에 따른 세부담과 경영권은 별개의 문제
   - 기업의 일감몰아주기와 공익법인을 통한 상속 및 증여 제도의 개선

2. **공정과세를 고려한 세율체계 개편**
   -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중하위 자산계층에서 세부담 증가
   -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증여세는 물론 소득세와의 정합성 고려
   - 혼인에 따른 증여 공제액의 확대보다는 정상 과세 후, 그 세수를 저출생 관련 재원으로 활용

* 전체적으로 조세지출 정비와 과세기반 확충 필요

1. **조세지출 중 적극적 관리대상은 “비과세·감면 정비 대상”**
   - 다른 항목에 비해 적극적 관리대상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
   - 개별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폐지 여부 판단
   - (청년)고용증대세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의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평가
2. **과세 기반의 확충을 위해서는 지하경제의 양성화와 역외탈세 방지 필요**
   - 지하경제의 양성화 조치: 세원의 철저한 관리, 조세정보의 투명한 공개, 자발적 납세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체계의 구축, 탈세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역외탈세 방지: 탈세를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법인에 대한 법인격 부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기준 인하와 신고대상자 범위의 확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규정과 차명금융계좌에 대한 처벌의 강화
3.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와 대학 국가장학금 확대에 따라 자녀 교육비 공제를 축소·폐지

6. 진보적 세제 개혁을 위한 실행 전략

- 첫째, 효율성 이론을 앞세워 부자감세에 반대하는 세력에 잘 대응. 이들이 주장하는 감세가 조세정의에 위반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장에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함.
- - 법인세 감세 낙수효과가 없다는 것은 많이 알려졌으나 최근 밸류업을 위한 배당소득세 인하, 자사수매입에 대한 세제혜택 주장에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음. 조세정의만을 가지고 대응이 어려움. 이러한 정책이 단기수익 추출로 기업 성장에 불리할 수 있다, 세수입을 가지고 혁신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로 대응해야.
- 둘째, 국가의 적극 역할이 성장과 양극화 해소, 저출산 해소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그 비전을 보이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정책과 증세 전략 제시. 즉 증세하는 것이 나에게도 이익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그리고 OECD 평균 기준이 중요.
- 셋째, 조세저항을 이길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의 누진성 추구. 그러나 부자증세만으로는 충분한 세수 확보 어려움. 단기적으로는 부자증세 혹은 누진증세를 추진해야 하지만 보편증세도 필요.

조세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세 검토

- 바람직한 세제 개혁 기조를 제시하고 동의를 얻기는 매우 어려움.

- 일반적 증세 방안은 현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복지 또는 복지제도를 위해 지출할 것이라는 신뢰를 주기에 미흡한 면이 있음.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거나 낭비될 수 있다는 염려와 불안이 있음. 그 염려와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목적세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회복지 지출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하는 목적세 제도를 통해 정치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목적세라는 경직성에 대한 비판 – 경직성을 완전히 불식하기는 어려울 것임. 그러나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복지지출 확대의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복지지출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면 경직성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수 있음. 목적세로 시작하여 수용성을 높인 후 제도가 정착되면서 경직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목적'이라는 칸막이를 그 때 가서 제거해도 늦지 않을 것임.

복지 확대에 사용 제시 vs 특정한 복지 연계

- **일본: 복지 목적 제시**
  - 2012년 소비세율을 5%에서 10%로 인상하면서 증가되는 세수입은 모두 고령화로 늘어나게 되는 사회보장비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즉, 사회보장세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소비세율을 2014년 8%, 20119년 10%로 인상하고, 그 증가되는 세액을 사회보장비로 사용하겠다고 한정하였으므로 목적세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음.

- **프랑스: 저임금, 저소득자영업자 사회보험료 면제용 일반사회보장세**
  - 보험료 징수의 기반을 근로소득뿐 아니라 재산소득, 퇴직소득 등으로 확대하여 일반사회보장세(CSG)를 징수함. 통합하여 징수하지만 급여제도별, 소득종류별로 각각의 부담률을 구분지어 규정. 에서 영국의 통합징수와 차이가 있음.

- **덴마크: 실업급여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위한 '노동시장세(Labor Market Contribution)'**
  - 기업의 직접적인 고용보험료 부담을 없애주고 소득을 세원으로 하여 목적세 형태로 고용보험 재원을 마련. 사회보험 방식의 고용보험에서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보험료율이 다른데 덴마크의 노동시장세는 소득세와 동일

➢ **각 국가의 복지 필요에 대응하여 다양하게 설계**.
➢ 그런데 프랑스와 덴마크는 복지가 이미 잘 발달되어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특정 복지용 목적세를 추가 설계한 것으로 보이고, 일본은 덜 발전한 복지국가라는 점에서 고령화에 두루 사용할 수 있게 느슨하게 제안한 듯. 대신 세수 효과가 큰 소비세 선택. 최근 일본에서는 소비세 인상에 대한 반발이 큼.

Saez & Zucman(2019)의 21세기 사회국가의 재원 계획: 누진적 보편증세 & 목적세

세수			지출		
구분	세금의 유형	세수 (국민소득 중 %)	구분	지출 유형	비용 (국민소득 중 %)
부유세	5천만 달러 이상에 2%	1.2%	보편적 건강 보험	현재 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들이 내는 연간 8천 달러	6.0%
	10억 달러 이상에 3.5%			현재 보험이 없는 노동자들을 위한 8천 달러	
소득세	배당과 자본소득에 대한 완전한 과세	1.7%	보편 교육	공공 육아 및 학령 전 교육 1.0%	1.0%
	최상위 소득 구간 소득세율 60%			공립대학 무료 학비 0.5%	0.5%
법인세	미국 기업에 대한 실효세율 30%	1.2%	판매세 삭감	판매세와 트럼프 관세 폐지	2.3%
	국가 단위 최저 법인세율 25%				
국민 소득세	비례세율 6%	5.6%			
합계		9.8%	합계		9.8%

국민연금 고갈 막을 대안 떠오른 국고 지원…"연금소득세 투입하자"

30~40대 국회의원 8명 제안

-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 소속 여야 30·40대 국회의원 8명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기금 고갈을 막기 어렵다"며 "최소 연간 1조원 정도의 규모라도 국고투입을 당장 내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첫걸음으로 '연금소득세' 징수액 총액을 국민연금에 자동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연금소득세'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으로 대부분 60대 이상 노인이 내고 있다. 연간 1500만원 미만 수령 시 나이에 따라 3.3%~5.5%를 적용하고, 1500만원 이상은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내년 예상 세수는 7845억원이고 매년 연금 수령자가 늘어나 2030년엔 1조1천억원으로 추계되고 있다.

토론문

- 김정진 (변호사)

1. 소득세, 법인세, 보유세에 대한 발표자에 지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함.

O 특히 52p에서 지적한 “누진증세 우선, 그러나 보편증세와 결합되어야”라는 지적은 부자증세만으로는 충분한 세원확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1960년대 미국 소득세 최고세율 90%이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하여야 함.

O 특히 현대 세제가 소득세(개인소득세+법인세)와 소비세 중심으로 부동산 보유세 등은 보조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
-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공산주의를 달성하는 두 번째 방책으로 ‘누진적 소득세’를 주장한 이래, 독일사민당 고타강령에서 소득세 단일세제를 주장했지만 그 소득세가 실질적으로 실현된 나라는 미국이었고, 결국 현대 세제는 소득세+소비세제가 균형을 맞추는 형태로 안착됨.(6:5) (사회보장기여금까지 합치면 2:1)

- 결국 증세를 하려면 소득세, 소비세 중심으로 하여야 하고, 공평성을 제고하려면 소득세 중심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 다만 한국에서는 부동산이 부의 원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일정한 과세강화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소득세, 법인세가 중요하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2.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가 중요한 과제(52p)라는 지적에 동의하며 조세 간소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함.

O 조세특례제한법은 총 147개조(실제로 조문은 더 많음. 예를 들어 제121조는의 제121조의 1부터 35까지 있음)로 해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음. 세금은 전문가만이 아는 것이고 심지어 전문가도 알기 어려운 분야가 되어 가고 있음.
- 2021. 9. 13. 자 경향신문기사 “세무사도 상담 꺼리는 양도세, 납세자는 ‘불안’ 국세청엔 ‘문의폭주’”
- 2022. 7. 10. 자 한국경제 기사 “양도세 비과세 조항만 74개...국세청 직원도 이해하기 힘든 법 됐다”

O 이는 점점 한국세법이 미국식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제도가 이렇게 투명하지 않으면 세금의 특성상 증세는 불가능

-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정하고도 효율적인 세금제도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스웨덴인들은 여러분 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낸다. 저는 제 월급의 42%를 낸다. 대부분의 스웨덴인은 자기 소득의 약 30%를 세금으로 낸다. 반면, 스웨덴에는 부유세, 증여세, 상속세가 없다. 다시 돌아와서 스웨덴은 소비세(부가가치세)도 높다. 대부분의 소비에 25%의 세금이 붙는다. 다만 음식, 옷, 책에는 6%만 붙는다. 왜 스웨덴의 사회민주당 정부는 부유세, 증여세, 상속세를 폐지했을까? 왜냐하면 이런 세금들은 걷는 데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 뿐 아니라 사회로 환원되는 양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금체계를 간소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했다. 이것이 공평하나고? 그렇다. 공평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단순함이다. 그 결과 오늘날 스웨덴에서 부과되는 세금의 약 98.5%가 실제로 걷힌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그 수치가 70%에도 못 미친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복지시스템에 대해 논의할 때 세금을 확실히 걷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것이 없으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다.” [1)]

O 소득세, 법인세의 비과세 감면을 조정하면서 세제를 가능한한 간소화시켜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3. 감세정책의 정치학

O 현재 한국 정치의 상황을 보면 감세의 악순환이 평소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큼

O 특히 금투세 폐지를 양당이 사이 좋게 합의한 것은 매우 안 좋은 징조임.
- 한국이 저발전 상태의 70년대도 아닌데 이렇게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비과세를 유지하는 것은 도저히 설득력이 없음. (1962년에 은행 국유화, 가차명 거래 허용,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를 실시했는데 이는 자본 부족 상태에 있는 국가에서 저축 증대라는 강력한 동기가 있었음. 1972년에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 5%를 다시 과세하기 시작함.)

O 저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이 눈 앞에 있음.
- 누진세 구조로 인하여 세수는 더 줄어들 것임

O 과거에도 감세가 있었지만 그 영향이 윤석열 정부만큼 크지 않았던 이유는 그동안은 과표가 양성화되어가는 과정이었지만 이제는 과표 양성화는 상당부분 진척되었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는 매우 가파를 것임.

---

1) 2013. 5. 22. 정의당이 주최한 라르스 다니엘손 주한 스웨덴 대사의 ‘사회민주주의, 스웨덴 보편적 복지의 근간’이라는 강연 중
https://www.youtube.com/watch?v=0Da7kpfk7V0

- 부가가치세 과세 업종 확대(1999),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1999),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2007), 전자 세금계산서 도입(2010), 과세자료 전산화 등의 진척
- 이제는 노동자만이 유리지갑으로 세금을 다 부담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음.

O 양당은 증세 정책으로 권력을 잃었다는 트라우마가 있음.
- 박정희의 정권의 부가가치세(1977) (일본 1989년 3%, EC 1960년 후반 도입, 영국, 이탈리아 1973년 도입, 미국은 여전히 매상세(sales tax), 부마항쟁 때 시민들이 “부가가치세 철폐하라”고 외쳤다는 기록.
- 노무현 정권의 종합부동산세(2005)

O 감세는 복지축소로 이어질 뿐 만 아니라 중산층 및 중소기업에 큰 고통을 안길 수 있음.
-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의 공통적 현상(과도한 세무조사, 기존 세무관행에 반하는 과세)
- 2025. 6. 15. 시행하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국세청장은 국세의 부과 · 징수 · 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 한도, 선정 기준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트럼프 시대 조세정책의 향배

O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로 소득세 및 그 주무무처인 IRS를 폐지한다고 밝히고 있음. 물론 실제 가능할지는 의문임.

O 만약 미국이 소득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줄일 경우(소득세는 사실 그 고향이 미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1913년 소득세 도입을 위해 헌법까지 고침) 이중과세 방지 협정 개정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큼
- 이중 과세 방지 협정은 자유무역이 실시된 2차대전 후 전쟁으로 인하여 높아진 각국의 소득세가 이중으로 부과될 경우 실질적으로 투자, 무역에 장애가 될 것으로 생각해 속지주의를 기초로 하여 한 쪽에만 부과하도록 조약을 맺게 되고 OECD에서 모범안을 만들고 각국이 이를 참조하여 양자협상으로 과세권을 배분하는 조약인데 예컨대 미국이 소득세를 폐지한다면 미국 법인이 해외에서 고율의 법인세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수 있음. (양국 국세청간 협의 또는 조약 재개정 이슈가 생길 것임.)

O 이것이 한국과 각국의 소득세제에 어떤 충격을 미칠지 여부에 대해서 대비, 검토가 필요함.

윤석열 정부의 감세효과[2)]

2025. 4.29.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1. 세수 결손 및 세수 감소 규모 비교

2년간 세수감소 현황: IMF(3%), 금융위기(-1.7%), 코로나 위기(-2.7%) 보다 극단적으로 심각한 -15%

○ 세수 결손은 예산 대비 부족한 금액을 일컫는 말. 24년 국세 예산 400.6조원 대비 국세 결산 금액은 336.5조원임. 예산 대비 세수 결손 규모는 30.8조원(-8.4%)임.

○ 반면, 세수 감소 규모는 23년 결산(344.1조원) 대비 24년 결산(336.5)금액과의 차액으로 7.5조원(-2.3%)임.

○ 전년보다 국세 수입이 감소하는 일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임. 실제로 1990년부터 2022년까지 32년 동안 전년 대비 국세수입이 감소한 해는 1998년(IMF 외환위기) 2009년(금융위기), 2013년(경기둔화), 2020년(코로나 위기) 이상 단 4개 년에 불과함. -1% 이상 국세 수입이 감소한 해는 IMF위기(-3%), 금융위기(-1.7%), 코로나위기(-2.7%) 이상 대규모 경제 위기를 겪은 단 3개 년을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음.

○ 24년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2.3% 감소했음. 이는 2009년 금융위기 국세수입 1.7% 감소보다 감소폭이 더 큼. 특히, 2023년, 2024년 2년 연속 국세수입이 감소했음. 물가는 오르고 경제성장률도 꾸준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전년도 국세 수입이 감소하면 차년도 국세수입은 기저효과로 인해 상승압력이 커지게 됨.

○ 이에 2년 연속 국세 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드문 일임. 실제로 1990년 이후 2년 연속 국세 수입이 감소한 적은 2023년, 2024년 외에 과거에 존재하지 않음.

○ 23년, 24년 2년간 국세수입 감소율은 22년 대비 -15%임. 이는 2020년 코로나위

2) 이상민(2025), 24년 총수입, 총지출 마감결과 분석, 나라살림연구소 나라살림브리핑 421호
2) 이상민(2024), 2020~2023년 상위 10대 기업 세금감면액 및 법인세 비용 분석
2) 이상민(2024), 정부별 세법 개정이 현 정부 및 차기 정부에 미치는 세수 효과, 조국혁신당 용역보고서 기초로 작성

기 국세수입 감소 폭(-2.7%)는 물론 1998년 외환위기 국세수입 감소 폭(-3.0%)를 압도하는 극단적인 국세 수입 감소 규모임.

<1990 ~ 2024년 중, 전년 대비 국세수입 감소 연도 전체 비교>

(단위: %)

연도	1998년	2009년	2013	2020	2023	2024	23, 24 2년간
경제 상황	IMF 외환위기	금융위기	카드대란	코로나 위기	?	?	
국세 증감률	-3.0%	-1.7%	-0.5%	-2.7%	-13.1%	-2.3%	-15%

2. 윤석열 정부 세법개정안 효과 분석

윤석열 정부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감세를 통한 부작용은
윤석열 정부 5년간 83.7조원의 재정여력을 감소하고 차기정부의 재정여력은 약 100조원 감소시킴

○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5년 누적 합계 기준으로 60.3조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는 큰 규모의 감세 세법개정안임.

○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세수감소효과가 5년간 누적 기준 약 30조원에 달했으며 증권거래세, 종부세 등 거의 모든 세목에서 큰 규모의 감세조치가 이루어 졌음.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세수감소 규모가 큰 개편안임.

○ 특히, 세법개정안 외로 2023년 1월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시설투자 및 R&D 공제 금액을 크게 확대했는데 이를 통해 5년간 약 13조원의 세수 감소효과가 발생함.(일몰 연장 가정)

○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5년간 누적 기준 2.9조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는 감세 세법개정안임. 자녀장려금 확대 및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및 개인택시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실시 등으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수가 감소됨.

○ 2024년 세법개정안은 5년간 누적기준 18.4조원 세수 감소 효과가 있는 큰 규모의 감세 세법개정안임. 상속세율 인하 및 상속공제 확대에 따른 감세가 전체 감

세 규모를 상회함. 다만, 카드수수료 및 전자신고 세액공제 등 부가가치세 증세 효과도 일부 존재함.

○ 결국, 윤석열 정부는 정권 첫해인 2022년에만 향후 5년간 -60.3조원의 감세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반도체 등 국가전력 산업 세액공제 확대, 상속세율 인하 등 큰 규모의 감세 조치를 지속적으로 발표하였음.

○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감세 정책으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83.7조원의 재정여력이 감소함.

○ 특히,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 감세 효과는 이후 차기 정부에 그 효과가 더욱 큰 폭으로 증대되어 차기 정부 5년간 총 100조원의 재정여력을 감소시킴.

○ 25년 총 국세수입 예상치가 382조원임. 1년 국세 총 국세수입이 400조원 내외에 이를 것을 고려해보면 5년간 100조원의 세수감소 규모가 차기 정부의 재정여력을 얼마나 큰 규모로 감소 시킬 것인지 짐작할 수 있음.

○ 결국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5년간 총 83.7조원의 재정여력이 감소되지만, 차기 정부에 미치는 악영향이 약 100조원으로 차기정부의 재정여력을 더 크게 감소시킴.

표 2 윤석열 정부 연도별 세법개정안의 5년간 세수효과

(단위: 억원)

	윤석열 정부					차기 정부					누적 소계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4 세법개정안			-6,227	-38,833	-3,888	8,756	-3,323				-183,942
23 세법개정안		-7,546	1,778	241	-269	1,077					-29,356
반도체등 세액공제확대		-44,307	22,800	-	-	-					-130,335
22 세법개정안	-64,096	-74,310	1,225	5,173	616						-603,083
연도별 누적합계	-64,096	-190,259	-170,683	-204,102	-207,643	-197,810	-201,133	-201,133	-201,133	-201,133	-946,716
정부별 누적 합계	-836,783					-1,002,342					

* 연도별 전년대비 기준(순액법)을 누적으로 합산함.

3. 정부별 세법 개정 세수효과 결과

○ 각 정부는 정파적 이익을 위해 감세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함. 다만, 감세를 통한 정파적 이익은 향유하는 반면 감세 정책의 부작용은 당해 정부뿐만 아니라 차기정부의 재정여력 감소로 이어짐.

○ 마찬가지로 정파적 손해를 감수하고 증세 정책을 감내하면, 그 증세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당해 정부뿐만 아니라 차기 정부의 재정여력 증대로 이어지게 됨.

○ 박근혜 정부는 4년간 일관되게 세수를 증대시키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함. 이러한 증세 조치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4년간 재정여력이 10.6조원이 증가함.

○ 특히,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세수 증대효과를 통해 약 21.8조원의 재정여력이 증대되었음. 박근혜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21.8조원의 세수 선물을 주었다고 평가 가능함.

○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첫 번째 세법개정안인 2017년에는 소위 핀셋 증세를 통해 증세를 단행했으나, 이후 4년간 지속적으로 작은 규모의 감세 정책을 발표함.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5년간 9.9조원의 재정여력을 마련했으며, 윤석열 정부의 재정여력도 5년간 약 6.8조원을 증대시킴.

○ 반면, 윤석열 정부는 3년 내내 큰 규모의 감세 조치를 단행함. 감세에 따른 정파적 이익과 별개로 윤석열 정부는 5년간 83.7조원의 재정여력이 감소됨. 윤석열 정부 내내 시달리는 세수감소와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과 무관하지 않음.

○특히, 윤석열 정부의 감세 조치로 차기정부의 재정여력은 더욱 드라마틱하게 감소함. 윤석열 정부의 단 3년간의 감세조치로 차기 정부에서 5년간 감소되는 세수효과는 무려 100조원을 초과함. 25년 총 국세 수입이 400조원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감안해 보면, 5년간 100조원의 세수효과가 얼마나 큰 규모인지 짐작 할 수 있음.

표 3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 세법개정안의 당기 및 차기 정부 세수효과

	당기 정부	차기 정부
박근혜 정부	10.6 조원 (박근혜 정부 4년간)	21.8 조원 (문재인 정부 5년간)
문재인 정부	9.9 조원 (문재인 정부 5년간)	6.8 조원 (윤석열 정부 5년간)
윤석열 정부	-83.7 조원 (윤석열 정부 5년간)	-100 조원 (차기 정부 5년간)

○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나친 증세 정부기에 윤석열 정부는 이를 되돌리는 측면에서 적절한 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음. 그러나 증세정부는 박근혜 정부이며, 문재인 정부는 2022년도 첫해 핀셋 증세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감세 조치를 통해 차기정부에 미치는 효과는 사실상 세수 중립에 가까움. 박근혜 정부가 차기 정부에 준 '세수 선물' 규모 21.8조원에 비해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 준 '세수 선물' 규모는 6.8조원으로 크지 않음.

○ 반면, 윤석열 정부가 차기 정부에 주는 '세수 부담' 규모는 -100조원을 초과하여 차기정부의 재정여력을 크게 감소시킴.

○ 감세는 그 정파적 성과는 현 정부가 누리는 반면 그 피해는 차기정부에 이전시킨다는 점에서 보다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이해 할 필요가 있음.

4. 시사점

○ 지난 정부 마지막해인 2022년 국세수입 396조원에서 윤석열 정부 2년만인 2024년 국세수입은 337조원으로 2년간 무려 15% 감소했음. 이는 코로나위기(-2.8%), 금융위기(-1.7%)는 물론 IMF외환위기(-3%) 시절 국세수입 감소규모를 큰 폭으로 초과하는 것임.

○ 정부는 이를 글로벌 복합위기 탓으로 설명하나 경기부진 외에 정부의 적극적 감세도 큰 영향을 줌. 실제로 2년간 경제성장률은 낮았으나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한 명목성장률은 23년 3.3%, 24년 5.9%로 98년 IMF 명목성장률(-0.7%), 2020년 코로나위기 명목성장률(0.9%)보다 크게 상회함. 2009년 금융위기 때 낮은 경제성

장률(0.8%)에도 불구하고 세수감소폭이 다른 경제위기 때보다는 양호한(-1.7%) 이유는 명목성장률(4.4%)이 높은 측면도 있음.

○ 즉, 국세수입은 실질성장률보다는 명목성장률에 더 큰 상관관계가 있는데 윤석열 정부 2년간 명목성장률은 꾸준히 상승함에도 국세수입 감소가 -15%가 발생한 것은 정부의 적극적 감세효과도 큰 규모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임.

○ 2022년 당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율 등을 내리면서도 세수감소 효과가 없다고 주장함.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법인세 감세효과에 따라 5년간 30조원가량 세수가 준다고 밝힘. 기재부 장관의 말을 기재부가 부정하는 상황임. 그러나 기재부 세수 감소효과도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지나치게 과소추계 되었음.

○ 즉,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의 문제점은 감세의 장단점을 모두 국민에 상세히 알리고 국민의 동의를 통해 감세를 한 것이 아니라 감세의 세수 감소효과조차 부정하고 국민을 속이면서 실시한 감세라는 점이 문제의 핵심임.

○ 한편, 윤석열 정부의 24년 세법개정안 감세의 핵심은 상속세 인하였음. 이것이 국회에서 부결되어 차기정부의 실질 감세효과는 5년간 -100조원이 아니라 -80조원으로 줄어들었음.

○ 그런데 24년 국회에서 부결된 상속세법 감세를 더 확대하여 25년에 재추진하고자 함. 만약 상속세법 감세안이 25년도에 추진된다면 다시 -80조원에서 -100조원으로 감세규모가 증가할 것임.

○ 문제는 차기 정부의 증세 방안도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것임. 24년 금융투자소득세를 폐기하면서 주식 양도차익 등 자본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게 되었음. 자본소득에는 한 푼의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노동소득 소득세를 더욱 강화할 수는 없음.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은 일정부분 법인세 증세를 추구했으나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은 법인세 감세를 추진한다고 함. 미국이 법인세율을 내리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법인세율을 증대하기는 어려움. 법인세는 국제조세경쟁이 중요하기 때문임. 그렇다고 정치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올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함.

○ 이런 상황에서 소득세 감세를 추가 추진한다고 함.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낮췄음. 22년 세법개정에서 과표구간을 높여 근로소득자의 부담을 완화했음

2022년 이전 과표 구간	2022년 이후 과표구간	한계세율
12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8%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
10억원 초과	10억원 초과	45%

* 소득세법

○ 이에 따라 23년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1.1%만 증가했는데 이는 경상GDP 상승률 3.3%는 물론, 소비자물가지수, 3.6%, 근로소득 급여총계 증가율 6.1%보다도 크게 낮은 증가율임.

○ 특히, 근로소득자 인원이 증가한 것까지 고려하면 22년과 23년 같은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 세금 부담은 큰 폭으로 감소했음. 이는 과표구간 상승뿐만 아니라 각종 공제 확대도 세부담을 감소했음.

	2022년	2023년	증감액	증감률
근로소득 급여총계	869,287,953	922,596,468	53,308,515	6.10%
근로소득자 인원	20,534,714	20,852,234	317,520	1.50%
근로소득세수	60,370,406	62,071,988	1,701,582	2.80%
근로소득 결정세액	59,145,880	59,783,897	638,017	1.10%
경상GDP	2,323,781,500	2,401,189,400	77,407,900	3.30%
소비자물가지수	107.7	111.6		3.60%

* 국세통계연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가공 분석

○ 실제로 2022년 각 구간별 1인당 세액과 2023년 각 구간별 1인당 세액을 비교해 보면 사실상 전 구간에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줄어 들었음. 22년보다 23년 근로소득세수가 증가한 것은 근로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만약에 22년과 23년 동일한 근로소득을 유지한다면 세액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음.

총급여	2022년 1인당 결정세액	2023년 1인당 결정세액	차액
1천만 이하	846,154	833,333	-12,821
1.5천만 이하	11,182	11,202	20
2천만 이하	64,578	64,474	-104
3천만 이하	199,299	187,327	-11,972
4천만 이하	600,850	531,879	-68,971
4.5천만 이하	1,110,394	1,018,967	-91,427
5천만 이하	1,514,611	1,412,735	-101,876
6천만 이하	2,200,305	2,086,586	-113,719
8천만 이하	3,822,640	3,627,351	-195,289
1억 이하	7,231,630	6,746,329	-485,301
2억 이하	17,442,930	16,996,526	-446,404
3억 이하	53,150,095	52,707,749	-442,346
5억 이하	102,250,945	101,055,079	-1,195,866
10억 이하	213,296,792	208,843,409	-4,453,383
10억 초과	804,902,550	750,667,292	-54,235,258
합계	4,338,644	4,281,106	- 57,538

* 국세통계연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가공 분석

○ 특히, 과표구간은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과표만 줄이고 고소득층의 과표는 그대로 유지했으나 줄어든 세금 액수는 10억원 초과에서 1인당 5400만원의 세금을 줄였음.

○ 결국 연봉5천만원 ~ 6천만원 근로자의 세금을 연11만원(월간 9100원) 줄이는 감세조치에 따라 5억원~ 10억원 근로자의 세금을 445만원 줄이고 10억 초과 근로자의 세금을 연간 5424만원 줄이게 됨.

○ 국가재정 지출 규모는 정해져 있기에 누군가의 세금을 줄이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 전체가 볼 수밖에 없음.